

원 복속기 국왕 國喪 시 외교의례의 전환과 이후 그것의 전유·존속

- 즉위와 책봉의 관계에 대한 이해 심화를 겸하여 -

최종석*

〈차 례〉

1. 머리말
2. 원 복속기: 告喪 시 告嗣位 대신 승습 요청 및 請諡 新出
3. 여말선초 시기: 원 복속기의 계승과 告訃·請諡·請承襲
4. 여언

[국문초록]

필자는 국왕 사후 책봉국을 상대로 행하는 외교의례 및 황제국 측이 조문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의례의 방면에서 고려전기와 조선 초기 간에 큰 폭의 시대적 간극이 가로놓였음을 밝히는 작업을 한 바 있다.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의 방면에서도 賓禮나 嘉禮에 수록된 통상적인 외교의례와 동일 혹은 유사하게 원 복속기에 들어서 의례상의 전면적인 전환이 있었고 그렇게 전환된 외교의례는 전유와 계승의 기제를 통해 고려 말기 이후로도 질적 변화 없이 존속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에서는 원 복속기를 분수령으로 한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지 못해, 본고에서는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 방면에서의 변화 또한 통상적인 외교의례의 체계과 마찬가지로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전환 양상이 고려 말기에 전유·계승의 과정을 통해 질적 변화 없이 그 이후로도 존속하였음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였고, 그러한 변화상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짚어 보았다.

[주제어] 외교의례, 고려, 조선, 원, 명

* 동덕여자대학교 인문학부 국사학전공 부교수

1. 머리말

최근 필자는 凶禮에 수록된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의 전환을 규명하기 위해 고려전기와 조선 초기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 즉 국왕 사후 책봉국을 상대로 행하는 외교의례 및 황제국 측이 조문 차원에서 행하는 외교의례의 방면에서 고려전기와 조선 초기 간에 큰 폭의 시대적 간극이 가로놓였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¹⁾ 이들 작업은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도 賓禮나 嘉禮에 수록된 통상적인 외교의례와 동질적인 혹은 유사한 궤적을 밟았음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의 일이었다. 賓禮나 嘉禮에 수록된 통상적인 외교의례는 원 복속기에 들어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고 그렇게 전환된 외교의례는 전유와 계승의 기제를 통해 고려 말기 이후로도 질적 변화 없이 존속하였는데,²⁾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에서도 동일 혹은 유사한 변화상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의 측면에서 고려 전기와 조선 초기 간에 큰 폭의 시대적 간극이 가로놓였음을 규명해 온 그간의 작업은 애초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예비작업에 가깝거나 변죽만 울릴 뿐이었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
- 1) 검토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전기에 없던 講諭 의례가 추가로 거행되었을 뿐 아니라, 사망한 국왕의 부고를 알릴 시에 즉위(사위)를 알리는 의례는 거행되지 않고 대신에 왕위의 부제를 전제로 하여(국내에서는 즉위가 이루어졌지만) 후계자의 왕위 승습을 요청하는 의례가 거행되었다. 그리고 고려전기에 거행된 起復 의례는 조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조선에서는 고려전기에는 없던 賜諡 의례가 실행되었다. 또한, 고려전기 祭筮禮와 조선(초기) 賜祭儀禮는 의례의 성격 면에서 현저히 달랐다. 즉 고려전기에 황제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행한 제전례는 기본적으로 군주 대 군주로서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망한 외국 군주를 추모하는 성격의 의례였다고 한다면, 조선(초기)에서 거행된 賜祭儀禮는 사망한 외국 군주를 추모하는 의례의 성격이 부재한 채, 군주가 신하를 대상으로 諭示하며 은전을 베푸는 諭祭를 명 황제가 사신을 보내 조선국왕에게 내리는(賜) 의례였다. 이에 관해서는 최종석, 「告哀·稱嗣에서 告訃·講諭·講承襲으로 -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국상 시 책봉국에 행한 외교의례를 비교하며 -」, 『한국문화』 9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최종석,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국상 시 황제국 측의 조문 외교 의례의 비교 탐색」, 『민족문화연구』 9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3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필자는 여러 편의 소논문들을 통해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한 외교의례의 전환상을 규명하는 연구 작업을 하였는데, 다음 글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종합한 것으로 외교의례의 전환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석, 「고려 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 '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의 이해 심화를 겸하여」, 김형찬 외, 『한국 문화의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원 복속기를 분수령으로 한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의 변화 과정을 검토하지 못해서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래의 연구 작업을 보완하고 마무리하는 일환에서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 면에서 고려전기와 조선 초기 간의 질적이고 단절적인 차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성립되었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 방면에서의 변화 또한 통상적인 외교의례의 궤적과 마찬가지로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전환 양상이 고려 말기에 전유·계승의 과정을 통해 질적 변화 없이 그 이후로도 존속하였음을 밝히고, 그러한 변화상의 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2. 원 복속기: 告喪 시 告嗣位 대신 승습 요청 및 請諡 新出

1) 고종 국상 시 외교의례 양상

고종의 薨逝에 따른 외교의례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변화했는데, 그러한 변화는 모종의 지향에 따른 게 아니라 변화된 여건과 우발적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한 데 따른 산물이었다. 이하에서는 그 변화 양상을 당대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고종은 고종 46년 6월 임인일(30일)에 柳璈의 집에서 薨逝하였다.³⁾ 고종이 사망한 당시에 왕태자 王僖은 고려에 있지 않았다.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몽골에 入朝하러 갔기(入朝蒙古) 때문이다. 관례대로라면 왕태자가 왕위를 잇도록 한 前王의 遺詔를 토대로 왕태자는 前王 사망 후 수일 내에 즉위(사위) 의례를 거행하고, 이후 그의 명의로 告哀表와 稱嗣表를 (책봉국)황제에게 올려 각각 前王의 사망과 자신의 嗣位(즉위) 사실을 알렸을 것이다.⁴⁾ 그

3)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6년 6월 임인.

4) 김지영, 「조선시대 사위의례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1, 조선시대사학회, 2012; 김철웅, 「고려시대 국왕의 즉위의례」, 『정신문화연구』 3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장지연, 「고려 초 卽位儀禮와 喪禮를 통해 본 권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 이승민,

런데 고종 사망 이후의 양상을 보면, 고종은 관례대로 왕태자가 왕위를 잇도록 하는 遺詔를 남겼지만,⁵⁾ 嗣位할 왕태자가 몽골에 입조하러 가 고려에 있지 않았기에 前王 사망 후 수일 내에 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첫 단추부터 다르게 채워질 수밖에 없던 것이다. 遺詔에서 고종은 왕태자의 부재를 감안하여 ‘嗣王이 使行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太孫이 軍國의 庶務를 담당하도록’ 명했다.⁶⁾ 왕태자가 곧바로 즉위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태손이 왕태자의 부재 동안 ‘임시로 국사를 살피는(權監國事)’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⁷⁾ 실제로 고종의 유조에 따라 태손은 태자 왕전이 돌아올 때까지 軍國의 庶務를 담당하였다.

고려는 몽골 측에 고종의 상을 알렸다.⁸⁾ 아직 몽골과의 강화가 매듭지어지지 않았어도,⁹⁾ 왕태자가 몽골과 강화를 맺기 위해 몽골에 入朝하러 간 상태인 데다가, 몽골에 체류 중인 왕태자에게 고종의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하기도 해서 고종의 상을 알리는 사신을 몽골 측에 보냈을 것이다. 이전과 다른 바 없이 몽골 ‘황제’를 대상으로 告哀를 행했지만, 여건의 다름에서 기인하는 차이도 있었다. 그간 책봉국과의 관계에서 국왕의 상을 알리는 표문의 주체는 즉위를 통해 새로이 국왕이 된 嗣王이었던 데 비해,¹⁰⁾ 이때는 嗣王이 존재하지 않았기에¹¹⁾ 표문의 주체는 임시로 軍國의 庶務를 담당하고 있던 태손이었을 것이다.¹²⁾ 이러한 변개는 의도한 게 아니라 전례 없는 여건에서 이루어진 임기응변이라 할 수 있다.

변화된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표문의 주체가 달라지긴 했어도 ‘告哀’는

『고려시대 국상 의례와 조문 사행 연구』,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5)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6년 6월 임인.

6)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46년 6월 임인.

7)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6년 6월 임인.

8)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6년 6월 “遣別將朴天植 告哀于蒙古”.

9) 몽골과의 강화를 위해 태자 왕전은 몽케 카안을 찾아가 항복해야 했는데, 만남이 성사되기도 전에 몽케는 사망하고 말았다. 그런데 고종은 몽케보다도 먼저 사망하고 있어, 고종 사망 직후 몽골 측에 상을 알리는 사자가 고려에서 출발한 시점은 강화 성사 전이었음이 분명하다.

10) 최종석, 앞의 논문, 2022, 152쪽.

11) 당시는 국왕위의 공백 상태라 할 수 있다.

12)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총서.

실행된 것과 달리, ‘告嗣位(稱嗣)’ 의례는 아예 거행되지 못하였다. 그간 전왕의 상을 알린 시에 ‘告嗣位(稱嗣)’ 의례도 거행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이때에는 사위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告哀’와 동반하여 ‘고사위’ 의례를 거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고 후술하듯 왕태자가 귀국 후 즉위하여 뒤늦게라도 고사위 의례를 거행할 수도 없는 게, 전례 없이 嗣位에 앞서 책봉이 먼저 이루어진 데서였다.

몽골 측은 고종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한국하려는 왕태자를 상대로 한국에 앞서 책봉을 단행하였다. 책봉은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몽골 측은 갑작스러운 고려왕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한국하려는 왕태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고려로 돌아가기 전에 그를 왕으로 삼으면(立僂爲王) 고려의 충성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심산에서 책봉을 단행한 것이다.¹³⁾ ‘王僂을 국왕으로 삼는다’라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王僂(원종)이 쿠빌라이 측에 의해 ‘왕이 된’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때의 책봉은 앞의 이유에서 고려 측의 책봉 요청이 없었음에도 왕태자를 왕으로 책봉한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일로, 몽골 측(정확히는 쿠빌라이 측)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한 임기응변이라 할 수 있다.

원종 1년 3월 갑신일(17일) 태자는 몽골 사신 쉬리다이(東里大)와 함께 고려 개경에 돌아오고¹⁴⁾ 그 뒤 한 달여 지난 후인 4월 무오일(21일)에 즉위하였는데,¹⁵⁾ 즉위(사위)하고 나서 몽골을 상대로 ‘고사위(칭사)’ 의례를 행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몽골 측은 이미 원종을 책봉하여 그가 고려의 국왕임을 알고 있었기에, 고려가 嗣位 사실을 몽골에게 알릴 필요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사위(칭사)’ 의례의 거행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원종의 사위 사실을 알리는 ‘고사위(칭사)’ 의례를 거행하지 않은 것 또한 의도와 계획의 산물이 아니었다. 고종의 사망 시에 때마침 몽골에 있는 왕태자

13)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원년 3월; 『元史』 卷4, 本紀4 世祖1 中統元年 3月 辛卯; 『元史』 卷208, 列傳95 外夷1 高麗 中統 1年 3月 참조.

14) 『고려사절요』 권18, 원종 1년 3월 갑신.

15) 『고려사』 권25, 세가25 원종 원년 4월 무오.

를 쿠빌라이 측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기지를 발휘하여 고려의 국왕으로 삼고 그 이후 원종이 귀국하고자 즉위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고사위(칭사)’ 의례가 필요 없게 되고 만 것이다.

한편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볼 때 몽골 측은 조문 외교의례를 행하지 않은 듯하다. 직접 왕태자에게 애도의 뜻을 전할 수 있어서인지, 양국 간에 군사적 긴장이 아직 온전히 해소되지 않아서인지, 혹은 몽골적 특성에서 연유해서인지 정확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조문 외교의례는 실행되지 않았다. 전에는 책봉국(황제국)이 고려 국왕의 부고 소식을 듣고 제전(칙제)과 조위(위문)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복을 위해 사신을 보냈지만,¹⁶⁾ 몽골은 고종의 흥거 소식을 듣고서 몽골에 와 있는 왕태자를 대상으로 귀국 전에 책봉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로도 원 복속기 내내 국왕 사후 몽골 측의 조문 외교는 보이지 않는다.¹⁷⁾

2) 원종 국상 시 외교의례 양상

원종 15년 6월 계해일(18일)에 원종이 堤上宮에서 홍서하였다.¹⁸⁾ 원종의 홍서에 따른 외교의례는 고종의 홍서 때와도 달랐다. 원종 대를 경과하면서 몽골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각종 사안을 겪어서인지, 고려는 몽골 혹은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 면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특히 고려 국왕과 신료들은 원(몽골)의 황제권이 고려 내에서도 실질적인 최고권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며 책봉권이 실질화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¹⁹⁾ 원종의 홍서

16) 이승민, 앞의 논문, 2018 참조.

17) 이에 관한 자세한 검토는 이승민, 위의 논문, 2018, 180~185쪽 참조. 이는 사망한 前王에 대한 조문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조문 사절이 오지 않은 것을 뜻한다. 조문 사절은 없었지만, 국왕 사망 시에 원에 체류 중인 후계자가 황제로부터 조문을 받기도 하였다. 가령 세자 왕십(충렬왕)은 조문의 내용이 담겼을 조서를 받았다. 이승민, 위의 논문, 2018, 181~182쪽 참조.

18)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5년 6월 계해.

19) 이명미,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해안, 2016, 59~78쪽 참조. 아울러 원 복속기에 원이 고려국왕에 대한 책봉의 권한을 일방적이고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심재석, 『高麗國王 冊封 研究』, 해안, 2002; 이익주,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 관계 요소의 탐색」,

에 따른 외교의례는 고종 사후와 달리 변화된 여건과 이에 대한 진전된 이해 속에서 ‘능동적으로’ 모종의 변개가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종 사망 당시에 왕세자 王諱은 전달에 원에서 쿠빌라이의 딸인 쿠틀룩 켈미시(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하고서²⁰⁾ 원에 체류 중이었다. 원종이 사망하자 고려는 원종의 상을 알리는 표문을 원 황제에 올렸는데(‘奉表告王植薨’,²¹⁾ ‘告哀悼表’²²⁾), 공교롭게도 고종의 흥서 시와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왕위를 계승해야 할 세자가 나라 밖에 있다 보니, 표문의 주체는 嗣王일 수가 없었다.²³⁾ 세자 王諱(충렬왕)은 표문을 올리는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에서 원종의 흥거 소식을 듣는 처지에 있었다.

고애와 달리 고사위 의례는 이때에도 거행되지 않았다. 정확히는 거행될 수가 없었다. 그 대신 후대에서처럼 告哀(告訃)와 동반하여 이루어진 請承襲과 같은 성격의 일이 출현하였다. 고려가 세자의 왕위 승습을 요청하는 원종 遺表를 원 측에 올린 일(‘上遺表于元’)이²⁴⁾ 바로 그것이다.

遺表의 검토에 앞서 원종의 遺詔에 관해 간략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때도 관례대로 원종의 遺詔가 있었다. 遺詔에서 원종은 세자가 왕위를 잇도록 명했다. 종래대로라면 遺詔에 따라 前王 사망 후 며칠 뒤 세자가 사위 의례를 거쳐 즉위했겠지만, 원에 체류 중인 세자는 그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²⁵⁾ 이러한 상황에서 ‘백관이 멀리서 세자 王諱을 받들어 왕으로 삼는(百官遙尊世子諱爲王)’²⁶⁾ 이벤트가 있었다. 이는 백관들이 遺詔를 수용하여 세자를 왕으로 받들겠다는 일종의 퍼포먼스라 할 수 있다.²⁷⁾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을 참고하기 바란다.

20) 『元高麗紀事』世祖皇帝 至元 11年 5月 十一日;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5년 5월 병술.

21) 『元高麗紀事』世祖皇帝 至元 11年 7月.

22) 『動安居士集』動安居士行錄卷第四, 賓王錄. 원문에는 ‘告哀都表’로 오기되어 있다.

23) 당시에는 사왕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위(사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24)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5년 6월 계해.

25) 후술하듯 국내에 있었어도 바로 즉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26) 『고려사절요』 권19, 원종 15년 6월 갑자.

27) 이러한 퍼포먼스는 고종 사후에 權臣 金仁俊(김준)이 몽골에 체류 중인 왕태자 대신에 안경공 창을 국왕으로 세우고자 한 데서 기인했던 갈등과 혼선의 경험을 고려한 조치였을 것이다. 『고려사』 권

재차 언급하듯, 원종은 遺詔 외에도 遺表를 남겼다.²⁸⁾ 원종 명의의 遺表는 세자가 왕위를 승습할 수 있도록 원 측에 요청하는 표문이었을 것이다. 국왕이 사망 직전에 遺表를 작성하여 후계자인 아무개가 왕위를 승습할 수 있도록 요청한 행위는 前例 없던 일로, 원종 대를 거치면서 책봉권이 실질화한 것과 맞물려 고려의 왕위가 원(몽골)의 책봉을 통해서야 국내외적으로 유효하게 된 데서 새로이 등장한 현상이었을 것이다.²⁹⁾ 특히 무신 집정자 임연에 의한 원종 폐위와 뒤이은 안경공의 사위가 종래와 달리 책봉국에 의해 사후 승인(책봉)받지 못하고 원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번복되어 원종이 복위하게 된 사건은, 국왕을 비롯하여 신료들이 고려 국왕권의 유효함은 원 황제의 인정을 토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³⁰⁾ 이러한 지적 환경에서 원종은 죽기에 앞서 세자가 왕위를 승습할 수 있도록 원 황제에게 요청하는 遺表를 새롭게 고안하여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고자 했을 것이다. 즉 원으로부터 책봉을 받아야 왕위가 실효를 갖게 되고 책봉받기 전까지는 왕위가 부재 상태에 처하기에, 고려 측은 이전과 달리 국왕위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왕이 사망하자마자 원에 세자의 왕위 승습을 요청하는 遺表를 올리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遺表는 후술하듯 고려 말기와 조선 시대 請承襲表³¹⁾의 원조 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遺表는 흉거한 전왕의 명의로 작성된 것인데 비해, 청승습표는 고려 말기에는 왕위 계승자로 승습을 원하는 자가, 조선

24. 세가24 고종 46년 6월 임인 참조

28)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5년 6월 계해 “又上遺表于元 且言世子謹孝謹可付後事”.

29) 후술하듯 고려의 자체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즉위는 원과의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되고 있었다.

30) 고려의 왕과 신료들은 원종 복위의 과정을 통해 황제권이 고려 내에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는데, 이 사안은 이명미, 앞의 책, 2016, 66~79쪽에서 치밀하게 다루어진 바 있다.

31) 청승습표는 명·청에 후계자의 국왕위 승습을 요청하는 표문이다. 일반적으로는 告訃請謚請承襲使가 청승습표 외에도 고부표와 청시표를 함께 가지고 가 황제에게 올렸다. 이현진, 「명·청의 賜祭·賜謚에 대한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이현진, 「조선전기 국왕 국장(國葬)에서 명(明) 사신의 의례실행과 그 공간」,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최종석, 앞의 논문, 2022; 이승민, 「고려 국왕 즉위에 관한 외교 형식의 변화와 의미」, 『역사문화연구』 86,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3 참조.

에 들어서는 의정부 혹은 전왕의 비가 작성한 것인 데서³²⁾ 차이가 있긴 해도, 국왕의 부고를 고하면서 동시에 흥서한 전왕의 후계자(대개는 세자)인 ‘아무개’를 책봉해 달라고 요청한 데서는 양자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 실제로 당시 세자의 승습을 요청한 遺表는 ‘告哀悼表’와 함께 원에 올려졌을 것이다.³³⁾ 明을 상대로 고려(조선)가 告訃表와 請承襲表를 함께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³⁴⁾ 『빈왕록』에 따르면,³⁵⁾ 원종이 사망한 원종 15년(1274) 6월 18일로부터 3일 뒤인 21일에 고예 사신단이 개경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들은 ‘告哀悼表’와 遺表를 함께 지니고 원으로 향했을 것이다.³⁶⁾ 하루라도 빨리 책봉을 받기 위해 원종이 사망하고서 3일 뒤에 유표를 지닌 사신이 원을 향해 출발한 것이다.

세자가 왕위를 승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遺表를 작성하여 ‘告哀悼表’와 함께 원에 올리는 일은 원 측의 요구에 따른 게 아니었다. 변화된 여건에 적응하고자 한 고려 나름의 능동적 조치였을 것이다. 책봉 조서에 따르면, “국왕이 살아 있을 때 世子가 왕위를 계승할 만하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라고 고³⁷⁾ 하여, 원종은 몽골 등장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여건-원(몽골) 황제의 고려 국왕에 대한 책봉권의 실질화-을 마주하여 원(몽골) 측에 세자가 왕위를 승습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언급하였는데, 죽기 직전에 遺表를 작성하여 세자가 왕위를 승습할 수 있도록 거듭 요청하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에서

32) 최종석, 위의 논문, 2022 참조.

33) 『元史』 卷8, 本紀8 世祖5 至元 11年 7月 癸巳(19일) 조에 따르면, “高麗國王王禕薨 遣使以遺表來上 且言世子惟孝謹 可付後事 勅同知上都留守司事張煥 冊禕爲高麗國王”이라고 하여, 계사일(19일) 조에 원종의 흥거 소식을 듣는 것과 遺表를 수령하는 것, 그리고 총렬왕을 책봉하는 것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는 遺表와 ‘告哀悼表’가 함께 올려졌거나, 따로 올렸다고 해도 거의 시차 없이 이루어졌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34) 『세종실록』 권134, 五禮 凶禮儀式 告訃請諡請承襲 참조.

35) 『動安居士集』 動安居士行錄卷第四, 賓王錄.

36) 앞서 언급한 바 있는 『元史』 卷8, 本紀8 世祖5 至元 11年 7月 癸巳(19일) 조에서 7월 19일은 총렬왕을 책봉한 날짜이고, 원종의 흥거 소식을 듣는 것과 遺表를 수령하는 것은 절차를 고려할 때 책봉 이전의 일이었을 게 분명하다. 『빈왕록』 기록에 따르면(『動安居士集』 動安居士行錄卷第四, 賓王錄), 7월 12일에 고려 사신단은 개평부에 도착하였고 다음 날 告哀悼表를 올렸다고 한다. 『빈왕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고려 사신은 遺表도 소지하고 가서 이것도 함께 올렸을 것이다. 그렇기에 『元史』에 원 측이 원종의 흥거 소식을 듣는 것과 遺表를 수령하는 것을 함께 수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37) 『고려사』 권28, 세가28 총렬왕 즉위년 8월 기사.

의 일이었을 것이다. 책봉이 더는 단순한 사후 승인이 아니라 원의 의지와 결정에 좌우되어 고려 자체의 질서, 왕실의 질서에 의해 정해진 후계자가 왕위를 승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변화된 여건에서, 원종은 이처럼 대응하였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원은 원종의 흉서 소식을 들었으며, 또한 함께 전달된 원종의 遺表에 응답하여 곧바로 同知上都留守事 張煥을 보내 世子 왕심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려를 향해 출발하는 사자에게 조서를 건넨 날짜가 7월 계사일(19일)이었을 것이고,³⁸⁾ 사자는 8월 기사일(26일)에 고려 궁궐 내 康安殿에서 책봉 조서를 전하였다.³⁹⁾ 충렬왕은 7월 18일 ‘宮主(제국대장공주)는 뒤에 갈 테니 먼저 돌아가서 상을 치르라’라는 황제의 명을 받고, 다음 날(19일) 개평부를 떠나 고려로 향했다.⁴⁰⁾ 동일한 출발 날짜로 미루어 충렬왕 일행과 책봉 조서를 전하는 사신단은 고려까지 함께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왕이 元에서 돌아오니 백관이 馬川亭에서 영접하였다. 왕과 동행한 원의 사신은 詔書を 받들고 먼저 개경으로 들어왔다”⁴¹⁾ 라고 하여 개평부에서 고려까지 동행하였음이 확인된다.

8월 무진일(25일)에 충렬왕은 개경에 돌아와서는 堤上宮으로 나아가서 殯殿에 배알하였다.⁴²⁾ 다음 날 康安殿에서 책봉 조서를 받았고, 이를 마친 후 景靈殿에 배알하고 康安殿으로 돌아와 즉위하였다.⁴³⁾ 이처럼 원종에 이어 충렬왕도 국내에서의 즉위에 앞서 원에 의해 왕이 되었다.⁴⁴⁾

충렬왕의 경우도 원을 상대로 ‘고사위(칭사)’ 의례를 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원 측에 즉위를 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충렬왕은 즉위(사위) 직전에 책봉 조서를 받았는데, 원 입장에서 보면, 전달인 7월에 이미

38) 『元史』 卷8, 本紀8 世祖5 至元 11年 7月 癸巳(19일).

39)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8월 기사. 『元高麗紀事』에는 8월 25일에 승위하였다고 한다. 『元高麗紀事』 世祖皇帝 至元 11年 八月 二十五日 “世子權還國 是日 襲位”.

40) 『動安居士集』 動安居士行錄卷第四, 賓王錄.

41)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8월 무진.

42)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8월 무진.

43)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8월 기사.

44) 충렬왕도 원종과 마찬가지로 즉위에 앞서 책봉이 이루어졌지만, 충렬왕의 책봉은 원종의 책봉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

충렬왕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하였다.⁴⁵⁾ 원 측은 충렬왕이 고려 국왕위를 승습하였음을 7월에 이미 알고 있었기에, 8월 기사일(26일)에 즉위를 하고 나서 고려가 이 사실을 원에 알릴 필요는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안을 검토하는 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원과의 관계에서 고려 자체적인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즉위(사위)는 유령과도 같은 게 되고 만 사실이다. 즉 고려가 자체적으로 행한 즉위(사위)는 원과의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에 의한 책봉만이 있을 따름이었다.⁴⁶⁾ 이러했기에 더욱더 즉위(사위)를 원 측에 알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원종이 흥서하고 나서 책봉국을 상대로 행한 의례는 종래의 告哀와 告嗣位 의례의 조합이 아니라, 고애 및 유표를 통한 세자의 왕위 승습 요청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원과의 관계에서는 고려 자체의 질서에 의해 행해진 즉위는 존재하지 않은 일로 치부되었고, 이와 맞물려 告嗣位 의례의 설 자리는 사라져버렸다. 이와 달리 책봉은 궐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되어서, 후계자(대개는 세자)의 승습을 요청하는 의례는 사망한 국왕의 부고를 알릴 시에 동반되어 거행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원의 계획에 의해 잉태된 것이 아니었다. 원은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고려 측이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소산이었다.

3) 충렬왕 국상 시 외교의례 양상

충렬왕 34년 7월 기사일(13일)에 충렬왕은 神孝寺에서 흥서하였다.⁴⁷⁾ 이후 전개된 국상 시 외교의례는 기본적으로 원종 사후에 이루어진 방식을 계승하는 식으로 구현되었다.

45)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 즉위년 7월 “元遣同知上都留守事張煥 冊爲王”; 『元高麗紀事』世祖皇帝 至元 11年 七月 “是月 詔世子祺襲爵 詔曰 諭高麗國王宗族及大小官員百姓人等 國王王植在日 屢言世子祺可以承替 今令世子王祺承襲高麗國王勾當 凡在所屬 並聽節制”.

46) 그런 점에서 ‘책봉 후 즉위하였다’라는 식의 언사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다.

47) 『고려사』 권32, 세가32 충렬왕 34년 7월 기사.

충렬왕이 사망하자 고려 측은 사신을 보내 원에 충렬왕의 상을 알렸다.⁴⁸⁾ 사신단은 사망 이틀 후인 신미일(15일)에 원을 향해 출발하였다. 표문을 올려 충렬왕의 상을 알렸을 것인데, 당시 원에 체류 중이던 심양왕 王璋(충선왕)은 원에서 부왕의 흉거 소식을 들었고,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10여 일 만에 급거 귀국하였다.⁴⁹⁾

충렬왕의 상을 알리는 표문과 함께 충렬왕의 遺奏도 원 측에 전달되었을 것이다. 충선왕을 책봉하는 조서에서 충렬왕이 王璋(충선왕)의 襲爵을 요청하는 遺奏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⁵⁰⁾ 충렬왕의 遺奏는 원종의 遺表를 계승한 것으로, 이와 동일한 성격의 것이 분명하다. 즉 충렬왕이 죽기 직전에 작성된 遺奏는 王璋(충선왕)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奏文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충렬왕이 죽자 고려 측은 원종 사후와 마찬가지로 궐위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 황제에 충렬왕의 상을 알리면서 동시에 국왕위의 승습을 요청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원과의 관계에서는(원 측에게는) 무의미한 일이긴 하나, 원 종 흥서 시와 마찬가지로 충렬왕은 遺教에서⁵¹⁾ 아들인 심양왕(충선왕)이 왕위를 잇도록 하는 의사를 밝혔다. 충렬왕의 遺教는 종래의 질서와 관행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내에 한정해서 의미가 있긴 해도 충선왕의 즉위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한편 충선왕은 상을 치르기 위해 고려로 급히 돌아왔다. 밤낮없이 길을 재촉하여 10여 일 만에 도착했다고 한다. 8월 임자일(26일)에 도착하여 먼저 殯殿에 나아가哭을 하고 제사를 지낸 후 仁明太后殿에 나아가 제사를 지냈다.⁵²⁾ 그리고 다음다음 날인 8월 갑인일(28일)에 충선왕은 景靈殿에 가서 嗣位할 것을 알렸고, 이후 壽寧宮에서 卽位하였다.⁵³⁾ 즉위는 고려 자체의 질서

48)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7월 신미 “遺僉議評理金利用如元 告喪”.

49)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8월 임자.

50)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10월 신해.

51) 다만 그사이에 遺詔는 참월하다고 하여 강격이 이루어져 遺教로 바뀌었을 것이다.

52)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8월 임자.

53)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8월 갑인.

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왕의 遺教를 기반으로 해서 귀국하고서 얼마 안가 성사되었다.

즉위가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원은 충렬왕이 작성한 遺奏에 화답하여 고려에 돌아가 있는 충선왕을 상대로 사자를 보내 책봉을 하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10월 신해일(26일)에 원의 사신이 고려에 와 충선왕을 ‘征東行中書省右丞相高麗國王’으로 책봉하였다.⁵⁴⁾ 『원사』 무종 본기에 따르면, 무종 지대 1년(1308) 9월 경진일(25일)에 고려국왕 왕장으로 고려왕을 잇도록 한다고 했는데,⁵⁵⁾ 이 무렵 원에서 출발한 사신이 10월 26일에 개경에 와서 충선왕을 책봉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충선왕에 대한 책봉은 원 복속기의 여타 사례와 달리 즉위 뒤에 이루어졌기에, 충선왕의 경우는 고려전기처럼 즉위 후 사후 승인으로서 책봉이 이루어진 사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⁵⁶⁾ 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우며, 충선왕의 사례도 본질적으로는 원 복속기의 여타 사례와 다른 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렇하다.

우선 충렬왕의 사후에 고려전기와 달리 고사위 의례가 거행되지 않은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책봉에 앞서 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고려 측은 원에 즉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고려전기와 달리 말이다. 그리고 이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원 측에 충렬왕의 상을 알리는 시에 왕장(충선왕)이 왕위를 승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충렬왕 遺奏를 올리는 일이 수반되었다. 거듭 언급하듯, 당시 고려와 원의 관계에서 책봉은 고려전기처럼 즉위를 사후승인하는 게 아니라 왕위의 공백 상태에서 왕위를 이을 만한 인물을 상대로 왕위를 잇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러했기에 고려 측은 闕位를 최소화하기 위해 遺奏를 통해 충렬왕이 사망하자마자 원에 국왕위의 승습을 요청하고 책봉을 기다려야 했을 것이다.

이 시기에 고려의 자체적인 질서에 의해 이루어진 즉위는 원과의 관계에

54)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8월 10월 신해.

55) 『元史』 卷22, 本紀22 武宗1 至大1年 9月 庚辰 “以高麗國王王璋 嗣高麗王”.

56) 다시 말해, 원종과 충렬왕의 경우와 이질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고려전기와 다름없이 즉위와 뒤이은 사후 승인으로서의 책봉이라는 양상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서는(원 측에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일이었고, 책봉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즉위는 책봉을 의식하면서 일반적으로 책봉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고려전기처럼 했다간 자칫 즉위한 인물이 원이 책봉한 인물과 다를 수도 있는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였을 것이다. 충선왕 사례는 시간 순서로만 보자면 분명 즉위가 책봉에 앞서지만, 책봉을 행한 원 측의 시각에서는 遺奏에 화답하여 왕장(충선왕)을 책봉한 것은 遺表에 응해 왕심(충렬왕)을 책봉한 것과 하등 다른 바가 없었다. 책봉에 앞서 거행된 즉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존재한 일로도 간주되지 않았을 것이다. 굳이 차이라고 한다면, 충렬왕의 책봉은 遺表에 화답하여 지체 없이 이루어진 데 비해, 충선왕의 책봉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遺奏에 화답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어졌을 뿐이었다.⁵⁷⁾ 고려에게도 즉위와 책봉은 선후를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으며, 즉위는 대외적으로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충선왕의 책봉 건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었을 뿐 충렬왕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책봉이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데다가 충선왕의 책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정되어 있었기에,⁵⁸⁾ 책봉에 앞서 즉위가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이때의 즉위는 고려전기처럼 원 측에 알릴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닌 까닭에, 당연히 원 측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告嗣位の 미시행). 시간 순서로만 보면 즉위가 책봉에 앞서긴 해도, 책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와 유의미한 차이는 없던 셈이다.

이처럼 충렬왕의 흥서 이후 전개된 외교의례는 사소한 차이가 있긴 해도 기본적으로 원종의 국상 시에 이루어진 것을 계승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57) 원으로서는 두 경우 모두 고려의 전왕이 遺表 혹은 遺奏를 올려 후계자(세자)의 승습을 요청한 것에 응해 책봉을 해 준 데서 양자 간에 어떠한 차이도 없었을 것이다.

58) 충선왕은 성종 테무르 사후에 벌어진 카안위 계승 분쟁에서 무종 옹립의 공을 세우면서 원조 내에서 위상이 크게 격상되었고, 이를 토대로 충렬왕 세력과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하여 복위 전에 이미 고려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원조의 功臣이면서 충선왕의 왕위 승습을 요청하는 충렬왕의 遺奏까지 있어, 충렬왕 사후 충선왕의 책봉이 다소 지체된다고 해도 책봉은 기정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충선왕의 무종 옹립의 공과 옹립 이후의 위상에 관해서는 고병익, 「高麗忠宣王의 元武宗擁立」, 『역사학보』 17·18, 역사학회, 1962 참조.

고 할 수 있다. 고애 및 유주를 통한 아들 王璋(충선왕)의 왕위 승습 요청의 조합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우발적이게도 또 하나의 의례가 추가되었으니, 請諡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충선왕은 즉위하고서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전례 없이 원 측에 흥서한 부왕의 시호를 요청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처음부터 이를 계획한 것으로 보 이진 않는다. 신하들이 관례대로 대행왕의 시호를 올리자, 충선왕은 이에 반응하여 종래의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원 측에 시호를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⁵⁹⁾ 기록상으로는 이 기사 뒤에 시호를 요청하는 사신을 보낸 사실이 적시 되진 않았지만, 다음 해(충선왕 복위 원년) 7월 임인일(22일)에 “上昇王의 시호를 청하는 표문은 密直副使로 致仕한 吳良遇가 짓도록 하라”라는 충선왕의 명령이 있는 점에서,⁶⁰⁾ 고려 측은 이 직후에 부왕의 시호를 요청하는 표문을 작성하여 사신을 보내 원 측에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왕의 3대조를 추증하는 制書를 수록한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2년 7월 을미 조에 따르면, “처음에 나라에서는 宋, 遼, 金の 正朔을 사용하였으나 역대의 시호는 모두 宗이라고 칭하였다. 원을 섬기기 시작하자 명분이 더욱 엄중해져서 옛날 漢의 제후들이 모두 한의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왕도 표문을 올려 上昇王의 존호를 청한 것이다. 또한, 고종과 원종 두 왕도 追諡해 줄 것을 청한 것이었는데, 조서를 내려 왕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라고 하여, 충선왕은 부왕의 시호뿐만 아니라 조부인 원종과 증조부인 고종의 추시도 요청하였다. 그러자 원 측은 고려의 請諡에 응해 ‘충렬’을 비롯하여 ‘충헌’과 ‘충경’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는데, 원 측의 賜諡는 시호 요청을 받고 나서 대략 1년 뒤에 이루어졌다고 추정되고 있어, 청사와 사시 간에 시차는 제법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시는 미리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 원에 있던 충선왕이 귀국하고 나서 한 달여 지난 후의 시점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청시는 결정되었고, 구체

59)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복위년 10월 병신 “有司議上大行王諡 王不可曰 有上國 在我且請之 竹冊玉冊 亦合於禮乎 於是 但上號曰純誠守正上昇大王”.

60) 『고려사』 권33, 세가33 충선왕 원년 7월 임인.

적인 실행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야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청시는 고려 말기 이후와 달리 고애와 동반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뒤늦게 행해지게 되었다.⁶¹⁾

한편 충선왕 2년 7월 을미 조 기사는 왕의 3대조를 추증하는 制書를 수록한 후 말미에 “원을 섬기기 시작하자 명분이 더욱 입증해져서 옛날 漢의 제후들이 모두 한의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왕도 표문을 올려 上昇王의 존호를 청한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의견은 원 복속 하에서 청시·사시가 당연하고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간주하고 있으나, 사후에 ‘유교적’으로 정당화를 시도한 해석이라 하겠다. 이 견해는 충선왕이 고려의 자체적인 上諡를 거부하고 請諡를 단행했었을 당시의 생각을 반영한 게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따라 ‘(고려가)원을 섬기기 시작하자 명분이 더욱 입증해졌다’라고 해도, 이로 인해 고려가 漢 제후들의 사례를 적용하여 원에 시호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의견은 원에 시호를 요청하고 원으로부터 시호를 받게 된 사후의 결과를 놓고 이에 짜 맞춘 해석이라 하겠다. 원은 그간 고려의 자체적인 시호 사용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 ‘명분이 더욱 입증해졌다’라고 해도, 달리 말하면, 국내에까지 제후 위상이 구현되었다고 해도,⁶²⁾ 고려는 漢의 제후와 같은 원 영내의 내신(내복) 제후가 아니라 외국(제후)이었고, 이러한 위상의 국가에서 시호를 요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기,⁶³⁾ 원 측은 고려가 시호를 요청해야 하고 이것에 응해 시호를 내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고려가 종래 관행대로 자체적으로 시호를 올리고(上諡) 원 측에 시호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원 복속기 내내 별문제 없었을 가능성은 꽤 컸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고려 측도 시호를 요청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호를 요청하게 된 것은 순전히 충선왕의 자체적인 판단의 소산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충선왕도 사전에 계획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61) 사시 또한 조선-명 관계에서와 달리 시호 요청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

62) 최종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참조.

63) 이와 맞물려 이러한 국가(外國)를 대상으로 시호를 내려 준 적도 없었다.

아니고, 신하들의 上諡 시도를 막아서면서 행한 임기응변에 가까운 조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선왕이 자신의 3대에 대한 추증을 요청하고 받아낸 것은 원 국내의 추증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선행 연구성과가 참고된다. 즉 원에서는 요청자의 훈위에 따라 추증의 범위를 정해두어 3대 추증은 정1품의 上柱國과 종1품의 柱國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었는데, 충선왕은 武宗 카이산 즉위 직후 공신호와 함께 상주국의 勳位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3대에 대한 시호 요청이 가능했다는 것이다.⁶⁴⁾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충선왕이 공신호와 함께 상주국의 勳位를 받았기에 3대에 대한 시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것(가능태)과 실제로 시호를 요청한 것(현실태)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 사실이다. 충선왕은 고려국왕으로 ‘外國之主’이기도 했기에, 시호 요청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시호 요청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려와 원에 조성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신하들의 뜻을 수용하여 上諡를 구현하는 것도 이상할 게 못 되었을 것이다. 더는 자체적인 上諡를 못하고 상주국의 勳位를 지닌 자로서 3대에 대한 시호를 요청해야만 했다면, 애초에 신하들이 上諡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선왕도 ‘上國이 있는데 시호를 요청하는 것이 예에 부합하겠는가?’ 식으로 대답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관행인 上諡를 더는 못하게 하고 원 국내의 추증 규정을 활용하여 자신의 3대에 대한 시호 요청을 해야겠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한 충선왕의 판단은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신하들이 대행왕의 시호를 올리는 관행에 직면하여 충선왕이 개성적으로 생각해 낸 ‘특수’라 하겠다. 그리고 충선왕은 이를 생각해 낸 과정에서 청시를 통해 원의 공신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부각하려 한 듯싶다.

이렇듯 충선왕이 원 측에 시호를 요청한 것은 원 복속기 들어 국내에까지 제후 위상이 구현된 데 따른(명분이 더 엄중해진 데 따른) 자동적 산물이 아니라, 충선왕의 특수성, 개성에서 비롯된 소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호 요청의 실행은 당시에 충선왕이 시호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구비되었

64) 안기혁, 「여말선초 대중국관계와 국왕시호(國王諡號)」, 『역사와 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2017, 235~236쪽.

던 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고려 측의 시호 요청에 응해 원은 기꺼이 시호를 내려주었다. 앞서 보았듯이, 원 측은 고려의 請諡에 응해 ‘충렬’을 비롯하여 ‘충헌’과 ‘충경’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충렬왕 사후 충선왕이 시호를 요청하게 되면서 후대에 국상 시 명을 상대로 행한 외교의례인 告訃·請諡·請承襲의 원형이 이때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前王의 상을 알리는 것과 遺奏를 통해 후계자의 承襲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전왕의 시호를 요청하는 것이 그 원형이라 할 수 있다.

4) 충선왕 국상 시 외교의례 양상

충렬왕 사후에, 정확히는 충선왕 복위기에 告訃·請諡·請承襲의 원형에 해당하는 조합이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조합은 이후 한동안 구현되지 못하였다. 성종 테무르 사후로 지속해서 카안 울루스 내 카안위 계승 분쟁을 비롯하여 권력 다툼이 격화되고 이것은 고려 국왕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⁶⁵⁾ 여기에 고려 자체의 변수마저 보태지면서, 후술하듯 국상 시 외교의례는 피치 못하게 그러한 조합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내외적 변수가 많았고 이것은 국상 시 외교의례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충숙왕 12년 5월 신유일(13일), 충선왕은 대도에서 홍서하였다.⁶⁶⁾ 사망 당시 충선왕은 이미 傳位한 상태였다. 즉 충선왕 5년 3월 갑인일(24일)에 충선왕이 아들인 강릉대군 왕도를 황제에게 알현시키고 傳位를 주청하자, 황제는 이를 수용하여 왕도를 왕으로 책봉했었다.⁶⁷⁾ 이미 傳位를 했기에 충선왕 사후에는 遺表·遺奏 등을 통해 후계자의 승습을 요청하는 일이 불필요했다.

65) 이익주, 「고려·원 관계의 구조와 고려 후기 정치체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권용철, 「大元帝國 末期 政局과 고려 충혜왕의 즉위, 복위, 폐위」, 『한국사학보』 56, 고려사학회, 2014; 최윤정, 「14세기 초(1307~1323) 元 政局과 고려-1320년 충선왕 토번유배 원인 재론」, 『역사학보』 226, 역사학회, 2015; 이명미, 앞의 책, 2016; 김광철, 『원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정치』, 경인문화사, 2018 참조.

66) 『고려사』 권35, 세가35 충숙왕 12년 5월 신유 “是日 上王薨于燕邸”.

67) 『고려사』 권34, 세가34 충선왕 5년 3월 갑인; 『고려사』 권34, 세가34 충숙왕 총서.

그리고 충선왕이 원의 대도에서 사망하다 보니, 고려는 원을 상대로 부고를 알리는 의례를 행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고려가 원으로부터 충선왕의 부고 소식을 들어야 했고(訃至), 원으로부터 온 시신과 관을 맞이한 후(迎梓宮) 장사를 치러야 했다.⁶⁸⁾ 이처럼 충선왕 사후에는 부고를 알리는 의례를 행할 수도 없었다. 여기에 더해 請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충숙왕이 충선왕이 시작한 청시를 의도적으로 계승하지 않으려 한 데서가 아니라, 시호를 요청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 데서였을 수 있다. 이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성종 테무르 사후에 벌어진 카안위 계승 분쟁에서 충선왕은 아유르바르와 다(후의 인종)와 다기 테후를 도와 부르간 황후와 안서왕파를 누르고 무중 옹립에 공을 세운 것을 계기로, 공신이 되고 왕작을 받는 등 무중 카이산과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대에 원 제국 내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영종 시대발라가 즉위하고 세력 관계가 재편되는 속에서 임바안투구스(任伯顔秃古思)의 모함으로 토번으로까지 유배 가기에 이르렀다. 충숙왕도 심왕 즉의 무고로 영종 시대발라 대에 몇 해 동안 인장을 압수당한 채 大都에 억류되었다. 영종 시대발라가 상도에서 대도로 南還하는 도중 南坡에서 피살되고 泰定帝 이순테 무르가 즉위하면서 세력 관계가 다시금 재편되자 충선왕은 사면을 받아 유배에서 풀려났고, 충숙왕은 충숙왕 11년 1월 갑인일(27일) 還國의 명을 받고 인장을 되돌려받았다.⁶⁹⁾ 충숙왕 12년 5월 신유일(13일)에 충숙왕은 공주와 함께 귀국하였는데,⁷⁰⁾ 이날 공교롭게도 충선왕이 대도에서 사망하였다. 충숙왕은 여러 해 원에 구류되었다가 이제 막 고려에 돌아온 데다가, 심왕 지지 세력들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지속되고 있었고, 충숙왕의 측근세력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여건에서,⁷¹⁾ 충숙왕은 시호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

68) 『고려사』 권64, 지18 禮6 흉례 국훈 충숙왕 12년 5월 갑술.

69) 『元史』 卷29, 本紀29 泰定帝1 泰定1年 春正月 甲寅 “勅高麗王還國 仍歸其印”.

70) 『고려사』 권35, 세가35 충숙왕 12년 5월 신유.

71) 김당택, 「고려 忠肅王代之 藩王 翁壼 운동」, 『歷史學研究』 12, 호남사학회, 1993; 김혜원, 「고려후기 藩王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이익주, 「14세기 전반 高麗·元關係와 政治勢力 동향 - 忠肅王代之 藩王 擁立運動을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9, 한국중세사학회, 2000; 이명미, 「忠肅王代 國王位 관련 논의와 국왕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듯싶다. 이외에 아직 양국 간에 청시·사시가 제도화 혹은 고착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충숙왕이 시호를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여하튼 충선왕 사망 직후뿐만 아니라 충숙왕 대 내내 시호 요청은 없었고, 후술하듯 충숙왕 사후에 충혜왕이 충선왕과 충숙왕의 시호를 한꺼번에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충선왕 사후에는 告訃·請諡·請承襲의 원형에 해당하는 조합 가운데 어느 하나도 거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충숙왕이 이들 의례의 계승을 꺼려서는 아니고, 이들 의례 가운데 여건상 아예 거행이 불필요한 것도 있었고 거행하기에 여의치 않은 것도 있어서였을 것이다.

5) 충숙왕 국상 시 외교의례 양상

충숙왕 사후 원을 상대로 한 행보는 충렬왕 사후와도 또 달랐다.

충숙왕은 복위후 8년 3월 계미일(24일)에 홍서하였다.⁷²⁾ 기록상으로는 원 측에 국왕의 부고를 알리는 의례의 거행이 확인되지 않는다. 충숙왕은 고려 내에서 사망했기에, 관행대로라면 원 측에 국왕의 부고를 알렸어야 했는데, 기록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원에 국왕의 부고를 알리는 기록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당시 원으로부터 復位の 명을 받아야 할 충혜왕이 원의 집권자인 바얀으로부터 배척받는 처지 속에서,⁷³⁾ 충숙왕의 부고를 알리는 의례는 거행되지 못한 듯싶다. 『元史』에 충숙왕 홍서 기록이 없는 것도 고려가 충숙왕의 상을 알리는 사신을 보내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충숙왕은 폐위된 충혜왕을 박대하긴 했어도 홍거 시에 ‘遺命으로 충혜왕이 왕위를 잇도록 했다(遺命襲位)’.⁷⁴⁾ 이것은 앞선 시기에 보이는 遺教

참조

72) 『고려사』 권35, 세가35 충숙왕(후) 8년 3월 계미 “王薨于寢 在位前後二十五年”.

73) 당시 충혜왕은 엘테무르 이후 국정을 장악한 權臣 바얀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되고 있었다. 김광철, 「고려 충혜왕대 측근정치의 운영과 그 성격」, 『國史館論叢』 71, 국사편찬위원회, 1996; 권용철, 앞의 논문, 2014 참조.

74) 『고려사절요』 권25, 충숙왕(후) 8년 5월.

(遺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충혜왕이 왕위를 잇도록 하는 충숙왕의 의사표명이라 하겠다. 이 遺命에 의거해서 충혜왕은 고려 내에서 국왕과도 같은 위상을 확보하였을 것이다.⁷⁵⁾

충혜왕의 경우처럼 前王이 사망하면서 복위한 충선왕 사례와 비교해 보면, 차별적인 지점을 더욱 뚜렷이 간취할 수 있다. 충선왕은 부왕의 사망 시에 원에 체류하고 있었고, 부고 소식을 듣고 고려에 돌아온 후 遺教에 의거해서 즉위하였다.⁷⁶⁾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 책봉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즉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충선왕과 달리 충혜왕은 부왕 사망 시에 고려에 있었다. 충혜왕이 왕위를 잇도록 하는 충숙왕의 遺命이 있었긴 해도, 후술하듯 충혜왕의 책봉은 미정이다 보니, 고려 내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였을 뿐 즉위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과의 관계에서 보면, 충숙왕의 흥서로 인해 왕위는 공백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왕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에 국왕의 부고를 알릴 시에 遺表·遺奏를 통해 후계자의 承襲을 요청해 왔는데, 이때에는 충숙왕의 遺表·遺奏가 부재하였다. 이러한 여건에서 전왕의 의사를 직접 밝히는 방식(遺表·遺奏) 대신에, 정동행성 左右司가 中書省에 문서를 보내 충숙왕의 뜻을 전한다든가, 충혜왕이 前評理 李揆 등을 보내 襲位를 요청한다든지 하였다.⁷⁷⁾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들 승습 요청이 주어진 여건의 상이함으로 인해 구체적인 형식 면에서는 전왕의 遺表·遺奏를 통한 승습 요청과 다르긴 해도, 국왕위의 공석을 전제로 해서 전왕 사후에 곧바로 승습을 요청한 대신 본질적으로 종래와 다르지 않은 방식이라는 점이다. 李揆 등이 승습 요청을 위해 원을 향해 출발한 시점은 확인되진 않지만, 충숙왕이 사망한 3월 계미일(24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때에 이규 등이 원을 향해 출발했어야지, 고려 조정은 5월 중에 이규가 보낸 譯語郎將 全允臧으로부터 원에

75) 단 즉위(복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76) 누차 언급했듯이, 즉위는 원 측에게는 무의미한 일이긴 하다.

77) 『고려사절요』 권25, 충숙왕(후) 8년 5월. 그간 원과의 관계에서 습위 당사자가 직접 나서는 경우가 없던 점을 고려할 때, 충혜왕은 승습 요청의 주체로 나서지 않고 신하들을 시켜 승습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도착한 이규 등이 행한 승습 요청이 결실을 맺지 못했던 사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달리 말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왕이 사망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충혜왕의 승습을 요청하는 사신단이 원을 향해 출발했을 것이다. 궐위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이다.

그런데 충혜왕은 원조의 집권자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던 권신 엘테무르가 사망하고서 그를 대신하여 권력을 독점한 권신 바얀으로부터는 냉대를 당하고 있는 데다가, 당시 단독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바얀은 심왕이 고려 국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⁷⁸⁾ 승위 요청은 수용될 수가 없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승위 요청이 이루어졌고 뇌물이 동원되기도 했지만,⁷⁹⁾ 권신 바얀이 견제하는 한 충혜왕의 복위는 성사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전례 없이 국왕의 사망으로 인한 왕위 공백이 길어졌다.

11월 병진일(2일)에 충혜왕은 원의 使者로부터 傳國印을 받았지만,⁸⁰⁾ 며칠 뒤 전국인을 전해 준 사자에게 잡혀 원으로 끌려가⁸¹⁾ 형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⁸²⁾ 원으로의 압송은 조적 무리의 참소로 인한 것이었다. 원 측은 충혜왕을 복위시키려 그에게 傳國印을 주었다가 뜻하지 않게 조적 무리가 참소하자 사자로 하여금 충혜왕을 잡아 오도록 한 게 아니라, 傳國印을 전달하여 충혜왕을 안심시켜 놓은 이후에 갑작스럽게 체포하려 한 것이었다.⁸³⁾ 애초에 충혜왕을 복위시킬 뜻은 없던 것이다.

고려 국왕위 계승자로 심왕을 염두에 둔 바얀의 주도 속에서 충혜왕에 대한 심문이 이어지며, 충혜왕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혜종 토곤테무르와 바얀의 조카인 御史大夫 특토가 바얀을 축출하고 얼마 후 바얀이 사망하면서, 충혜왕은 기사회생하였다. 곧 특토가 황제에게 상주하여 충혜왕은 석방되고 복위까지 하게 되었다.⁸⁴⁾ 이처럼 복위하는 데 있어 승상

78) 이에 관해서는 김광철, 앞의 논문, 1996; 권용철, 앞의 논문, 2014; 이명미, 앞의 책, 2016 참조.
79)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즉위년 5월 병자;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즉위년 6월 임간;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즉위년 9월.

80)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즉위년 11월 병진.

81)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즉위년 11월 병인.

82)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1년 1월 신미.

83) 권용철, 앞의 논문, 2014, 85쪽.

비안이 걸림돌이었지만, 비안이 물러나면서 충혜왕은 복위할 수 있던 것이다. 충혜왕은 국내에 돌아와서 충선왕과 달리 복위 예식을 거행하진 않았다.

한편 충혜왕은 복위하고 나서 대략 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충선왕과 충숙왕의 시호를 요청하였다. 『고려사』 세가에 따르면, 王熙를 원에 보내 大行王(충숙왕)의 시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⁸⁵⁾ 王熙 열전에 따르면, 이때 충선왕과 충숙왕의 시호를 함께 요청했다고 한다.⁸⁶⁾ 충숙왕 대에는 前王 충선왕에 대한 시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고, 충혜왕은 우여곡절 끝에 복위해서인지 한동안 시호를 요청하지 못하다, 충혜왕 복위 3년에 충선왕과 충혜왕의 시호를 요청하였다. 그렇지만 결과는 원 측이 충혜왕의 시호 요청을 외면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⁸⁷⁾ 결실을 거두진 못했지만, 충혜왕 복위 3년에 충선왕과 충혜왕의 시호를 요청한 일은 충선왕이 시작한 청시를 관행으로 정착하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달리 말해, 충선왕이 시작한 請諡는 단점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국왕들에 의해 계승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충혜왕 국상 시 외교의례 양상

충혜왕은 충혜왕(후) 5년 1월 병자일(15일)에 원의 악양현에서 홍거하였다.⁸⁸⁾ 揭陽縣으로 유배 가는⁸⁹⁾ 도중에 비명횡사하였다. 충혜왕은 원에서 사망했기에, 원에서 사망한 전대 왕과 마찬가지로 고애 의례는 거행되지 못했고, 원에서부터 충혜왕의 영구가 왔다(喪至).⁹⁰⁾

84)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1년 3월 갑자.

85)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3년 2월 경술. 왕후를 사신으로 보내 원에 請諡表를 올리도록 하였을 것이다.

86) 『고려사』 권110, 열전23 王熙.

87) 원 측은 충혜왕의 시호 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 사시는 충목왕 즉위년에 이루어졌다(『고려사』 권37, 세가37 충목왕 즉위년 12월 정축). 王熙 열전에 따르면, 柄國者가 걸림돌로 작용하였는데 왕후의 노력으로 마침내 賜諡가 성사되었다고 한다. 안기혁은 이때의 사시를 새로이 즉위한 국왕에 대한 배려로 추정하였다. 안기혁, 앞의 논문, 2017, 239쪽 참조.

88)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5년 1월 병자 “薨于岳陽縣”.

89)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4년 12월 계축.

충혜왕 후4년 11월 충혜왕은 원이 보낸 인사들에 의해 포박되어 원으로 압송되고⁹¹⁾ 나서 유배길에 올랐었기에, 사망 당시 충혜왕은 국왕이 아니었고, 이와 맞물려 충혜왕 사망 이전에 이미 국왕위는 공석 상태였을 것이다.⁹²⁾ 충혜왕의 처지를 감안할 때, 遺表(遺奏)는 말할 것도 없고 遺教조차 남길 수 없었음이 당연하다. 이로 인해 충혜왕 이후 고려 왕위를 승습할 존재가 불명확하였고, 이와 맞물려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원 측을 상대로 하여 아무개가 왕위를 승습하도록 요청하는 일 자체가 시도되지 못했다. 원 복속기 내에서도 전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혜왕 후5년 2월 기황후 세력으로 활동하는 고용보는 충혜왕의 8살 된 元子 王昕(충목왕)을 안고 혜종 토곤테무르를 알현하였고, 이 자리에서 王昕은 혜종 토곤테무르로부터 자질을 인정받아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는 황제의 명을 받았다.⁹³⁾ 『元史』에 따르면, 至正 4년 3월 임인일(12일)에 충목왕이 고려국왕을 잇도록 했다고 한다.⁹⁴⁾ 前王이 원조의 죄인으로 유배 도중에 사망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변태적인 방식으로 새 국왕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충목왕은 원에 체류하면서 이 명령을 받고 고려로 귀국하여 4월 을유일(26일) 개경에 도착하였고,⁹⁵⁾ 다음날 원 사신 쉹게(桑哥)가 개경에 와서 충목왕을 왕으로 책봉하는 조서를 반포하였다.⁹⁶⁾ 그리고 다음 달 갑오일(6일)에는 원 사신 李麻와 秦瑾이 와서 王昕(충목왕)을 왕으로 책봉하였다.⁹⁷⁾

이처럼 충혜왕이 원의 죄인으로 갑작스레 원에 끌려가 유배 가는 도중에

90) 『고려사』 권37, 충목왕 즉위년 6월 계유 “大行王之喪 至自岳陽”.

91) 『고려사』 권36, 세가36 충혜왕(후) 4년 11월 갑신.

92) 국왕위의 공석에 대응하여 郊社를 지내고 사면령을 반포한다는 명목으로 元에서 온 大卿 도치(朵赤) 등은 충혜왕 체포 당일 고용보에게 명하여 國事를 바로잡으라고 하고, 德成府院君 奇轍과 理問 洪彬을 權征東省事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93) 『고려사절요』 권25, 충혜왕(후) 5년 2월. 그 내막에 대해서는 김형수, 「충혜왕의 폐위와 고려 유자 儒者들의 공민왕 지원 배경」,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참조.

94) 『元史』 卷41, 本紀41 順帝妥權貼睦爾 至正 4년 3월 壬寅.

95) 『고려사』 권37, 충목왕 즉위년 4월 을유.

96) 『고려사』 권37, 충목왕 즉위년 4월 병술 “元遣桑哥來 頒詔曰……”.

97) 『고려사』 권37, 충목왕 즉위년 5월 갑오. 이것 전에 政丞 奇轍, 萬戶 權謙, 前總郎 盧永이 國璽를 받들어 行宮에 나아간 일이 있었다. 『고려사』 권37, 충목왕 즉위년 4월. 한편 어려서인지 즉위의례는 거행되지 않은 듯하다.

사망하고 왕위를 承襲할 자가 불분명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국왕의 상을 알리는 의례는 물론이요, 청승습에 해당하는 일조차 거행되지 못하였다.

請諡의 경우, 충혜왕이 죄인으로 유배 도중 사망한 탓에, 아들인 충목왕과 충혜왕비인 德寧公主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시도되지 못하였다.⁹⁸⁾ 그러다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인지 충목왕 4년 3월에 왕은 寧川府院君 李凌幹을 원에 보내 충혜왕의 시호를 요청했다.⁹⁹⁾ 이 일에 앞서 충목왕과 德寧公主는 시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혜왕의 죽음을 야기한 禍의 원흉인 康允忠의 罪惡을 바로잡아 충혜왕의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는 金倫의 의견에 공감하였다. 이에 강윤충의 죄를 바로잡고 원에 충성한 충혜왕의 한을 위로해 달라고 요청하는, 金倫 및 李齊賢·朴忠佐 등의耆老가 작성한 상소문을 원에 올렸으며,¹⁰⁰⁾ 김륜으로 하여금 改正表와 請諡表를 원에 올리도록 했다. 김륜은 원으로 가는 채비를 하는 중 병이 나 사망하고 말았지만,¹⁰¹⁾ 김륜을 대신하여 寧川府院君 李凌幹이 이 두 표문을 원 측에 전달하였을 것이다.

이렇듯 충목왕은 늦게나마 부왕의 시호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고려 측의 시호 요청과는 별개로 원 측은 충혜왕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시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충목왕과 충정왕 국상 시 외교의례 양상

충목왕 4년 12월 정묘일(5일)에 충목왕이 金永暉의 집에서 흥거하였다.¹⁰²⁾ 국왕 흥거 시 오랜만에 告哀가 확인된다.¹⁰³⁾ 곧 동월 병자일(14일)에 국왕의 상을 알리는 사신이 원을 향해 출발하였다. 당시 고려는 충목왕의 상을 알리는 표문을 원(황제)에 올렸을 것인데, 표문의 주체는 고려전기와 같

98) 『고려사』 권110, 열전23 諸臣 金倫.

99) 『고려사』 권37, 세가37 충목왕 4년 3월 임인.

100) 상소문은 왕에게 올려졌을 것이나, 국왕은 이를 원 측에도 올렸을 것이다.

101) 『고려사』 권110, 열전23 諸臣 金倫.

102) 『고려사』 권37, 세가37 충목왕 4년 12월 정묘.

103)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즉위년 12월 병자 “遣護軍申元甫如元 告哀”.

이 嗣王일 수는 없었다. 후술하듯 충목왕 사후 고려왕위를 누가 승습할 지가 뚜렷하지 않아 후계자로 할 수 있는 인물이 표문의 주체일 수도 없었다.¹⁰⁴⁾

충목왕은 사망 당시에 11살로 관례도 치르지 못한 어린 나이이다 보니,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자식이 없다 보니, 후계와 관련한 遺敎도 遺表(遺奏)도 없었다. 이는 고려 왕위를 승습할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충목왕 4년 12월 기묘일(17일)에 政丞 王熙 등이 李齊賢을 원에 보내 王祺(공민왕)와 王暉(충정왕) 가운데 왕을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렸다.¹⁰⁵⁾ 이 또한 원 복속기 내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다. 遺表(遺奏)도 없고¹⁰⁶⁾ 국왕의 자식도 없으며 고려 내에 왕위를 계승할 만한 인물이 복수로 존재한 데다가 원이 후계자로 지목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인물이 부재한 여건에서, 征東省의 일을 대행하고 있는 정승 왕후 등은 후계자 후보군에 해당하는 충혜왕의 동생인 王祺(공민왕)과 차남 王暉(충정왕)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위 승습자로 결정해 줄 것을 원 측에 요청한 것이다.

국왕의 상을 알리는 표문을 지니고 갔을 사신보다 며칠 뒤늦게 떠났긴 했어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국왕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표문은 국왕의 상을 알리는 표문과 함께 원 측에 올려졌을 것이다. 이 또한 국왕위의 공백을 전제로 해서 국왕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긴 해도 전왕의 사망 직후에 遺表(奏)를 통해 '아무개가 국왕위를 승습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와 동질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왕 사후 국왕위가 꺾어진 상황에서 아무개의 승습을 요청하는 일의 일종인 셈이다.

원 측은 고애표와 왕후 등이 올린 표문을 받고도 몇 달이 경과한 후인 충정왕 원년 5월 무술일(8일)에 이르러서야 왕자로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¹⁰⁷⁾

104) 표문의 주체는 충혜왕비인 德寧公主일 수 있고, 德寧公主의 명으로 '征東省事'를 攝行하는 임무를 맡은 德城府院君 奇轍과 政丞 王熙일 수 있다(『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4년 12월).

105)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즉위년 12월 기묘 “王熙等遣李齊賢如元 上表曰……”. 그리고 후계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國事를 책임질 주체를 세워야 해서 충목왕의 모후인 德寧公主는 德城府院君 奇轍과 政丞 王熙가 '征東省事'를 攝行하도록 명하였다(『고려사절요』 권25, 충목왕 4년 12월). 이는 충혜왕 체포 당일 德成府院君 奇轍과 理問 洪彬이 權征東省事로 임명된 조치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106) 원과의 관계에서 遺敎는 遺表(遺奏)와 달리 직접적인 기능을 하진 못했어도 遺敎를 토대로 신하들이 전왕의 의사를 원 측에 전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교조차 없었다.

이에 앞서 동년 2월 갑술일(13일)에 원은 前知都僉議事 崔濡를 고려로 보내 왕저의 입조를 요구하는 황제의 명을 전했다.¹⁰⁸⁾ 원은 왕위의 계승자로 왕기(공민왕)가 아니라 왕저(충정왕)를 염두에 두고 왕저의 입조를 명하였을 것이다. 왕저는 입조하고 두어 달 뒤에 황제로부터 ‘嗣王位’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충정왕은 翰林學士 생계(雙哥)의 護行을 받으며 충정왕 원년 7월 병진일(27일)에 고려로 돌아왔다. 이날 생계(雙哥)는 國印을 충정왕에게 전하였고,¹⁰⁹⁾ 국인을 받고 나서 충정왕은 康安殿에서 즉위하였다.¹¹⁰⁾ 한편 충혜왕과 충목왕의 시호를 요청하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시호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이다. 짧은 재위 기간을 감안할 때, 계획이 있었어도 실천으로 옮겨지진 못했을 것이다.

공민왕 원년 3월 신해일(7일)에 충정왕은 강화도에서 홍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을 먹고 죽었다.¹¹¹⁾ 충정왕은 사망 당시 국왕이 아니었다. 전년도 10월 임오일(6일)에 원이 왕기를 왕으로 삼고서 斷事官 完者不花를 보내 倉庫를 봉하고 國璽를 거둬들이도록 하였고,¹¹²⁾ 이와 맞물려 충정왕은 왕위에서 물러나 강화도로 갔었기 때문이다.¹¹³⁾ 충정왕은 원에 의해 폐위된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는지, 그리고 공민왕이 충정왕을 정식 국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해서인지¹¹⁴⁾ 고려는 원 측에 충정왕의 상을 알리는 일조차 하지 않은 듯하다. 아울러 시호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원에 의해 폐위된 충정왕이 사망하고 나서는 고애 의례가 거행되

107)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원년 5월 무술 “帝命元子祗 嗣王位”.

108)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원년 2월 갑술.

109)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원년 7월 병진.

110)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원년 7월 병진 “是日 王卽位于康安殿”.

111) 『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 원년 3월 신해.

112) 이때 원이 보낸 斷事官 完者不花가 와서 공민왕을 왕으로 삼았음을 알렸을 것이다.

113) 『고려사절요』 권26, 충정왕 3년 10월 임오 “元以江陵大君祺爲王 遣斷事官完者不花 封倉庫 收國璽 以歸 王遜于江華”. 『元史』에 따르면, 9월 입술일(16일)에 조서를 내려 공민왕이 고려왕위를 승습하도록 하고 충정왕은 폐위하였다(『元史』 卷42, 本紀42 順帝5 至正 11年 9月 壬戌). 고려에 이 일이 전달된 것은 다음달 임오일이었을 것이다.

114) 충정왕은 사망 후 공민왕 대에는 태묘에 부묘되지 못하다 우왕 대에 이르러서야 태묘 부묘가 이루어졌다. 공민왕 대에는 정식 국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안기혁, 앞의 논문, 2017, 244쪽 참조.

지 않았고, 이미 원이 공민왕을 왕으로 삼았기에 승습을 요청하는 의례도 아예 불필요하였으며, 청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¹¹⁵⁾

3. 여말선초 시기: 원 복속기의 계승과 告訃·請諡·請承襲

공민왕 23년 9월 갑신일(22일)에 공민왕이 시해되었다.¹¹⁶⁾ 공민왕 18년부터 원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명에 사대를 해왔기에,¹¹⁷⁾ 이때 고려는 국상 시 외교의례를 원이 아니라 명을 상대로 거행해야 했다.

공민왕 사후 명을 상대로 거행한 국상 시 외교의례에 관해 검토하기에 앞서, 이때 즉위 면에서 원 복속기와 큰 폭으로 달라진 양상을 먼저 짚어 보아야 한다.

공민왕 사후에 고려 자체의 질서에 의해 행해진 즉위는 원 복속기와 달리 전왕 사망 후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前王이 사망하고(9월 22일) 나서 며칠 뒤(9월 25일) 논란 끝에 이인임이 百官을 이끌고 우왕을 국왕으로 세웠다.¹¹⁸⁾ 앞장에서 보았듯이, 원 복속기였다면 우왕 즉위는 이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우왕 즉위의 경우는 전왕의 遺敎도 부재하고 후계자가 상대적으로 뚜렷하

115) 공민왕 16년에 원은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을 대상으로 공신호와 시호를 수여하였다. 다소 일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충목왕 대에 충혜왕의 시호를 요청한 적이 있지만, 충목왕과 충정왕의 시호를 요청한 일은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특히 공민왕 대에 정식 국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충정왕을 대상으로 해서 시호 요청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다. 이때 사시는 원이 여의치 않은 국내 정세 속에서 고려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다지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사』 권41, 세가41 공민왕 16년 1월 정해 참조.

116) 『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 23년 9월 갑신 “王暴薨”.

117) 공민왕은 1369년(공민왕 18) 4월 명의 건국과 홍무제의 즉위를 알리는 璽書를 받고서 다음 달에 원의 연호를 정지시키고 표문을 올려 등극을 경하하고 은혜에 감사해하였다(『고려사절요』 28, 공민왕 18년 5월). 그러자 명은 다음 해 5월 사신을 보내 壽命과 印信을 전하였고(『고려사』 42, 세가 42 공민왕 19년 5월 갑인), 이에 고려는 몇 달 뒤 홍무 연호를 사용하였다(『고려사』 42, 세가42 공민왕 19년 7월 을미).

118)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 23년 9월 정해. 왕위를 이을 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왕은 宰樞와 함께 ‘發喪舉哀’하였고(『고려사』 권64, 志18 禮6 홍례 국홀 공민왕 23년 9월 병술), 다음날 논의 끝에 고려 국왕이 되었다.

지 못하여 의견이 갈리는 속에서 이루어진 데서, 원 복속기에서라면 충목왕 사후처럼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을 것이다. 곧 고려는 원 측에 太后·경복흥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宗親과 이인임이 밀고 있는 왕우 가운데 왕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이고, 원이 이 가운데 누군가로 왕위를 잇도록 명하면, 이후 그 명을 받은 자는 고려 내에서 즉위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명에 사대한 이후 원과는 사뭇 다른 명과의 관계를 경험해 온 탓인지, 공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왕위 계승자의 불확실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고려 내에서 신속하게 국왕이 결정되어 즉위가 단행된 것이다. 원 복속기와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큰 폭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왕 즉위가 명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처럼 신속히 이루어진 것은 고려전기와 동일한 모습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즉위는 고려전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어도, 공민왕 사후 명을 상대로 거행한 국상 시 외교의례는 고려전기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을 상대로 했던 방식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게 이루어졌다. 정확히는 원 복속기에 이루어졌던 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¹¹⁹⁾ 이러한 계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왕 즉위년 11월에 密直使 張子溫과 典工判書 閔伯萱를 명의 남경에 보내 공민왕의 상을 알리고(告訃) 賜諡와 承襲을 요청한(請賜諡·請承襲) 사실이다.¹²⁰⁾ 다만 張子溫과 閔伯萱는 사행 도중에 명사 피살 사건이라는 대형 악재의 발생 소식을 듣고서 임무를 방기하고 돌아와,¹²¹⁾ 결과적으로는 명에 공민왕의 상을 알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다시 금 다음 해(우왕 원년) 1월에 判宗簿寺事 崔源을 보내 공민왕의 상을 알리고(告喪) 시호와 승습을 요청하였다(請諡及承襲)¹²²⁾ 명 측 기록에 따르면, 崔源은 공민왕의 상을 황제에게 고하였다고 한다.¹²³⁾ 우여곡절이 있긴 해도 告

119) 이는 고려 말기 국상 시 외교의례가 고려전기와 이질적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120)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즉위년 11월.

121) 『고려사절요』 권29, 공민왕 23년 11월 “林密蔡彬所至遲留 彬酌酒 每欲殺金義 至開州站 義殺彬及其子 執密 以甲士三百馬二百匹奔于北元 張子溫閔伯萱逃還 義本胡人也”.

122)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원년 1월.

123) 『太祖高皇帝實錄』 卷98, 洪武 8년 3월 丁卯.

訃(告喪)·請賜諡·請承襲의 조합을 거행한 것이다. 이는 告哀와 告嗣位 의례의 조합을 복구하는 게 아니라, 원 복속기의 방식을 계승하였음을 말해 준다. 종래와 달리 원이 아니라 명을 상대로 한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¹²⁴⁾

告訃(告喪)·請賜諡·請承襲의 조합 중에서는 충선왕이 새로 시작하여 원 복속기 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請諡를 명을 상대로 행한 사실도 역사적 의의가 크겠지만, 이것 못지않게 원 복속기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前王의 상을 알릴 시에 諡를 전제로 하여 후계자 아무개의 承襲을 요청하는 방식을 계승하여 명을 상대로도 告訃 시에 청승습 의례를 시행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원 복속기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고려 자체의 질서에 의해 행해진 즉위는 원과의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되었고, 일반적으로는 원 측이 왕위를 승습하도록 한 명령이 있고 나서 이루어졌으며, 이와 맞물려 고려 측은 왕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왕의 상을 원 측에 알릴 시에 遺表(奏) 등을 통해 후계자의 承襲을 요청하였고, 告嗣位 의례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공민왕 사후에는 고려전기와 동일하게 흥서 후 며칠 만에 고려 내의 자체 질서를 통해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였다. 자체 질서에 따른 신속한 즉위(사위)와 맞물려 告嗣位 의례가 부활하였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으나¹²⁵⁾ 실제로는 전혀 그러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왕의 상을 알릴 시에 諡를 전제로 하여 遺表(奏) 등을 통해 후계자의 承襲을 요청하는 원 복속기의 방식을 계승한 청승습 의례가 시행되었다. 요컨대, 원 복속기와 달리 그리고 고려전기처럼 前王의 상을 알릴 시에 즉위한 국왕이 존재했지만, 의례상으로는 원 복속기처럼 고려의 왕위는 공백 상태라 가정되었고¹²⁶⁾ 이와 맞물려 후계자 아무개가 왕위를 승습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례가 조속히 거행되어

124) 공민왕이 피살된 데다가 貢馬 호송의 임무를 맡은 金義가 開州站에서 명 사신을 살해하고서 복원으로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면서 고려는 북원에도 부고를 알렸다(『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즉위년 12월). 그렇기는 해도 북원에는 부고 소식만을 전하여 애초부터 명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구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25) 고려전기에는 告嗣位(稱嗣) 의례가 거행되었다. 이승민, 앞의 논문, 2018 참조.

126) 달리 말하면, 명을 상대로도 왕위는 공백 상태였다.

야 했을 것이다.¹²⁷⁾

의례 면에서 원 복속기와의 연속을 확대해석하여 즉위 면에서의 차이 및 그것이 갖는 의미를 경시해서는 안 되지만, 의례 면에서 원 복속기 양상을 계승한 사실을 간과해서도 곤란하다. 특히 그러한 계승이 지나는 의미 및 계승의 맥락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의례 면에서 원 복속기의 양상을 계승한 역사적 맥락을 시론적이긴 하나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명과의 관계에서도 원 복속기와 마찬가지로 황제의 제후라는 위상이 대내적으로 구현되었지만, 이와 차원을 달리한 채 독자성은 원 복속기와 달리 사실상 온전히 향유되었다.¹²⁸⁾ 그리고 당시 대내적으로 황제의 제후라는 위상을 구현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제후로서 행해야 할 예를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예의 실천은 명의 감시·강제 하에서 행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감각에서는 제후 의례라 생각되는 예를 실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명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고려 자체의 질서에 따라 새 국왕이 신속하게 즉위(사위)하는 것은 후자 차원의 일, 곧 독자성 향유라고 한다면, 의례상으로 고려 왕위의 공백을 가정하면서 후계자 아무개(고려 내에서는 이미 즉위한 인물)가 왕위를 승습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명에 요청하는 것은 전자의 일(제후 예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전기처럼 국왕 즉위가 명의 의사와 상관없이 前王 사후에 신속히 이루어지면서도, 원 복속기처럼 전왕의 상을 명에 알린 시에 후계자 아무개의 承襲을 요청한 현상의 맥락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前王의 상을 알릴 시에 궐위를 전제로 하여 후계자 아무개의 承襲을 요청하는 방식은 원 복속기에 원 황제의 고려 국왕에 대한 책봉권의 실질화와 맞물려 등장한 것이지만, 실질적 책봉권이 기능하지 못하는 고려 말기의 상황에서도 고려 측은 이러한 방식을 제후국에서 행해 왔던 일로 전유하여 계승·실행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 공민왕 사후 명을 대상으로 거행한 告訃·請賜諡·請承襲

127) 필자의 이러한 이해 방식은 고려전기 稱嗣와 고려 말기 請承襲 의례를 다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보는 종래의 견해와는 상이하다고 하겠다. 이승민, 앞의 논문, 2018, 173-174쪽 참조.

128) 당대의 맥락에서 양자는 기본적으로 공존하였다.

의례는 원 복속기에 이루어진, 좁게는 충렬왕 사후에 이루어진 의례와 동질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賓禮나 嘉禮에 수록된 통상적인 외교의례가 원 복속기를 분기점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전환되었고, 전환된 외교의례는 고려 말기에 전유·계승의 과정을 통해 그 이후로도 질적 변화 없이 존속하였음을 규명한 바 있는데,¹²⁹⁾ 국상 시 외교의례에서도 이와 동일한 궤적이 확인되는 것이다.

공민왕 사후 명을 대상으로 거행한 告訃·請賜諡·請承襲 의례가 원 복속기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기에 따른 차이가 존재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 복속기와 달리 고려 내의 자체 질서를 통해 국왕이 신속하게 즉위하였고,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국왕이 즉위한 후에 告訃·請賜諡·請承襲이 거행되었다. 국왕 시해와 명사 살해라는 초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告訃·請賜諡·請承襲 의례는 애초의 계획보다 늦게 거행되었기는 하지만, 관례대로 했어도 즉위는 전왕 사망 후 3일 뒤에 거행된 데서, 이들 의례가 즉위 이후에 거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¹³⁰⁾

다른 차이로는 원 복속기에는 告訃 및 請承襲에 해당하는 의례의 주체가 승습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때에는 승습 대상자인 우왕(고려 내에서는 이미 즉위함)이 告訃와 請承襲의 주체였던 사실이다.¹³¹⁾ 전술했듯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즉위는 명과의 관계에서 의례상으로는 의미를 지니진 못하기에, 우왕은 왕위의 공백 상태를 가정한 채 후계자의 위상에서 이들 표문을

129)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개괄적인 글로는 최종석,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 ‘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의 이해 심화를 겸하여, 김형찬 외, 『한국 문화의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참조.

130) 다만 원 복속기에 請諡는 즉위 이후에 이루어졌다. 청시의 시행 시기와 관련하여 뚜렷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은 듯하지만, 전왕 사망 직후 이루어지는 告訃 및 이와 동반한 請承襲에 해당하는 의례와 달리, 請諡는 전왕 사후 꽤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시호는 즉위 이후에 요청되었다.

131) 告訃表는 확인되지 않지만, 함께 올려졌을 承襲表에는 “伏念 臣禍惡運既深 先臣奄逝 ……許孤臣 仍守遺基”라고 하여, 표문의 주체가 우왕이었음이 확인된다. 請諡表도 ‘臣父先臣顯’이라는 어구로 볼 때 표문의 주체는 우왕이었다. 告訃表의 주체도 우왕이었을 것이 비교적 확실하다고 하겠다.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즉위년 11월 참조.

올렸을 것이다.

또 다른 차이로는 당시에는 원 복속기와 달리 告訃·請賜諡·請承襲가 세트로서 거행된 사실이다. 원 복속기에는 告訃 및 請承襲에 해당하는 의례가 세트로서 거행된 데¹³²⁾ 비해, 공민왕 사후에는 請賜諡까지도 告訃·請承襲과 함께 거행된 것이다. 이 말인즉슨 원 복속기에는 請賜諡가 告訃 및 請承襲에 해당하는 의례와 달리 전왕 사망 후 한참 지난 후에 행해졌다고 한다면, 명을 상대로 해서 국왕의 상을 알릴 시에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명을 상대로 해서 청시와 청승습은 고부 시에 함께 거행되어야 하는 것이 되었다.

한편 명은 꽤 오랫동안 책봉과 賜諡를 해 주지 않았다. 고려와 명은 공민왕 대부터 요동 일대의 민인 및 제주도에서 방목해 온 말 등을 놓고 갈등하였는데,¹³³⁾ 이러한 상황에서 공민왕이 시해되고 명사 蔡斌이 고려 측 인사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홍무제는 공민왕의 죽음과 우왕의 즉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책봉을 미루고 고려에서 파견한 사신들을 억류하는 등 고려를 극도로 불신하고 경계하였다. 그러다 명 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막대한 세공을 내걸고, 고려는 오랜 기간에 걸쳐 국가의 역량을 쥐어짜 힘겹게 조건을 충족한 끝에, 우왕 11년 9월에 책봉과 賜諡가 이루어졌다.¹³⁴⁾ 그사이에 고려 측은 청시와 청승습을 세트로서 해서 명 측에 지속해서 이를 요구하였다¹³⁵⁾ 단 告訃는 청시·청승습과 달리 요청이 아니라 전왕의 상을 알리는 것이기에 단건으로 끝났다. 여기서 주목되는 변화는 賜諡도 책봉처럼 조속히 받아야 하는 것이 된 사실이다. 이는 告訃 시에 請承襲은 물론이요, 請賜諡도 함께 거행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일로, 원 복속기와는 달라진 현상

132)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하였다.

133) 김순자,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해안, 2007; 정동훈, 「몽골제국의 붕괴와 고려-명의 유산 상속 분쟁」,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참조.

134)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 9월.

135) 우왕 4년 3월에(『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4년 3월), 우왕 8년 11월에(『고려사』 권134, 열전46 우왕 8년 11월), 우왕 9년 8월에(『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9년 8월), 우왕 10년 7월에(『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0년 7월), 우왕 11년 5월에(『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 5월) 請諡表와 請承襲表를 올렸다. 표문의 주체는 모두 우왕이었다.

이라 하겠다. 명은 계속 거부하다 결국 고려의 요청을 수용하여¹³⁶⁾ 우왕을 책봉하고 前王에게 공민이라는 시호를 하사하였다. 원과 달리 명은 책봉과 시호 사여를 함께 진행한 점이 눈에 띄는데, 이는 명의 능동적 결정이라기보다는 고려가 請承襲과 請賜諡를 세트로 지속해서 요청하자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라 하겠다.

고려 시대에는 공민왕의 국상을 끝으로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는 더는 거행되지 못하였다. 연이은 정치적 혼란 때문이었다. 우왕과 창왕은 왕위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처형을 받아 사망했고, 사망 당시 각각 신돈의 아들과 손자로 간주되었다. 그러했기에 명을 상대로 이들의 상을 알리지 않았다.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경우도 왕위에서 물러나 공양군으로 강등되고서 몇 년 후 태조의 명을 받아 絞殺되었다.¹³⁷⁾ 조선 측이 명을 상대로 공양군의 상을 알리지 않았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¹³⁸⁾

공민왕의 국상 이후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는 조선에 들어서 다시금 거행되었다.¹³⁹⁾ 조선에서의 국상 시 외교의례는 공민왕 사후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였다. 곧 告訃, 請諡, 請承襲 의례가 거행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이들 세 의례가 거행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공민왕의 국상 시와 마찬가지로 告訃 시에 請諡와 請承襲 의례가 동반되어 거행되었다. 다만 告訃·請諡·請承襲이라는 온전한 조합이 작동된 것은 왕위 계승이 전왕의 사망으로 인해 이루어진 세종 사후부터였다. 그전에는 告訃 시에 請諡만이 동반되었다. 1408년(태종 8) 태조 승하 시에 국왕인 태종은 이미 책봉을 받았고, 정종이 1419년(세종 1)에, 태종이 1422년(세종 4)에 승하한 시에도 국왕 세종은 이미 즉위 하고서 책봉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¹⁴⁰⁾

136) 그간 홍무제는 우왕이 표문을 통해 요청한 承襲과 賜諡를 번번이 기각하다가, 우왕 11년 5월 承襲과 賜諡의 요청을 드디어 수용하였다. 정확히는 사신인 尹虎와 趙胖이 표문을 갖고 고려를 출발한 때가 5월이고, 7월 계해일(3일)에 홍무제가 '襲爵'과 '王顯封諡'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太祖高皇帝實錄』 卷174, 洪武 18年 7月 3日(癸亥).

137)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4월 17일(병술).

138) 더욱이 창왕과 공양왕은 명의 책봉도 받지 못해 명과의 관계에서 이들이 왕이었던 적은 없었다.

139) 조선에서의 국상 시 외교의례에 관한 이하의 서술은 최종석, 앞의 논문, 2022를 토대로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다른 점은, 공민왕 사후에는 請承襲이 승습을 받고자 하는 인물이(국내에서 이미 즉위한 인물) 표문을 올려 승습을 요청하는 의례였다고 한다면, 조선에서는 승습을 받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의정부 혹은 전왕의 비가 흥서한 전왕의 후계자(국내에서 이미 즉위한 존재)인 아무개를 책봉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례란 점이였다.¹⁴¹⁾ 고려 말기와 조선 시대에 공통으로 전왕 사후에 신속하게 즉위가 이루어지고, 즉위 이후 청승습 의례를 거행하면서 명을 상대로는 왕위가 공석이었음을 가정한 채 해당 예식을 거행하였지만, 承襲을 요청하는 표문의 작성 주체는 상이했던 것이다.¹⁴²⁾

고려 말기와 상이한 조선 시대의 방식은 승습을 받고자 하는 존재가 자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 데서 고안된 것이라 추정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조선의 자기 신념-제후 분의의 견지-속에서 시도된 것으로, 왕조 교체 직후에 왕조 교체·국왕 즉위 면에서 제후의 분의에 걸맞은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들을 창출하고자 한 움직임의¹⁴³⁾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새로운 방식에 해당하는 사례로는, 이성계의 즉위 다음 날, 都評議使司와 大小臣僚, 閑良, 耆老 등이 知密直司事 趙胖을 보내 명 예부에 申文을 올린 일이 있다. 이 申文은 실제와 달리 이성계가 아직 문하시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설정하고 恭愍王妃 安氏의 命으로 공양왕이 사저로 물러난 후 공백이 된 ‘軍國의 사무를 통솔하는 자리’에 민심이 선택한 이성계를 추대하고자 하니 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였

140) 이현진, 앞의 논문, 2012, 135~137쪽.

141) 『세종실록』 권134, 五禮 凶禮儀式 告諫請諡請承襲에 따르면, 의정부는 승습의 요청을 (명 예부에) 申報한다고 한다. 실제로 성종 즉위년에 議政府는 승습의 요청을 명 예부에 申報하였다(『성종실록』 권1, 성종 즉위년 12월 경신). 이외에도 예종 즉위년에 국왕은 사신단이 告諫請諡請承襲의 임무를 겸해 온 통상적 방식과 달리, ‘청승습사’와 ‘고부청시사’를 구분해 보냈다. 이는 청승습사가 의정부에서 보내는 것인데 비해 告諫請諡使는 왕이 보내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예종실록』 권1, 예종 즉위년 9월 기사). 이때에도 의정부는 명 측에 승습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승습의 요청은 (왕)대비가 주본을 갖추어 요청하는 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드물지 않은 듯하다(이현진, 위의 논문, 2012, 140쪽).

142) 이러한 조선의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원 복속기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원 복속기에도 승습받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왕 혹은 신하가 승습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143) 최중석, 「조선 건국의 대외적 정당화 작업과 중화 보편의 추구」, 『한국사연구』 180, 한국사연구회, 2018 참조.

다.¹⁴⁴⁾ 이외에도 1395년(태조 4) 11월 신미일(11일), 도평의사사가 명 예부에 신문을 보내 誥命과 印章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¹⁴⁵⁾ 이때 명을 상대로 해서 이성계의 즉위는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되었고, 이성계의 지위는 ‘權知朝鮮國事’였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긴 해도, 조선 시대에 청송습 의례가 운용되는 방식은 이들 사례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은 취지로, 곧 조선 국내에서는 이미 즉위한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신 의정부나 왕대비가 궐위를 가정한 채 후계자(국내에서는 이미 즉위한 인물)의 송습을 요청한 방식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조선 시대 들어서 처음 있는 국왕 국상 시에 명 측이 弔問(외교)의례를 행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⁴⁶⁾ 즉 태종 8년 9월 명 황제는 조선에 사신을 파견해서 태조의 사망에 조문하는 의례들인 賜祭 의례, 賜賻 의례, 賜諡 의례를 거행토록 했다.¹⁴⁷⁾ 이들 의례의 실행은 단건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졌다.¹⁴⁸⁾ 그간 원 복속기 이래 국왕 국상 시 弔問(외교)의례는 사실상 거행이 중단되었다. 고려전기 국왕 국상 시 弔問(외교)의례는 제전(칙제), 조위(위문) 의례 외에도 起復 의례가 거행되기도 하였는데,¹⁴⁹⁾ 원 복속기 들어서 국왕 국상 시에 원 측의 弔問(외교)의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무엇’으로 개편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종래의 방식이 중단되고 만 것이다. 고려 말기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 태조 사망을 계기로 해서 국왕 국상 시 황제국 측의 弔問(외교)의례가 재개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원 복속기 이전의 의례가 복구되는 게 아니라 이것과는 전혀 이질적인 弔問(외교)의례가 구현되었다.

태종대에 재개한 弔問(외교)의례가 원 복속기 들어서 중단되기 이전의 고

144)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7월 정유.

145) 『태조실록』 권8, 태조 4년 11월 신미.

146) 명 측의 조문 외교 의례에 관한 이하의 서술은 최종석, 앞의 논문, 2023을 토대로 작성했다.

14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임신;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계유;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갑술.

148) 이현진, 앞의 논문, 2012; 이현진, 앞의 논문, 2018; 윤승희, 「조선 초기 賜賻·賜諡·賜祭儀禮와 明禮의 영향」, 『한국학논총』 5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22; 최종석, 앞의 논문, 2022 참조.

149) 이승민, 앞의 논문, 2018 참조.

려전기와 이질적인 모습으로 거행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명이 조선 측에 보내준 의주인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를 바탕으로 각각 賜祭 의례, 賜賻 의례, 賜諡 의례를 거행한 데서였다. 명(영락제)은 전례 없이 그리고 여타 조공국과 달리 조선에 한정해서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를 보내주어 준행토록 하였고, 조선 측은 이들 의주에 의거해서 해당 의례를 거행하였는데, 명 측이 보내주고 조선이 준용한 賜祭儀注, 賜賻儀注, 賜諡儀注는 외국이자 제후국인 조선을 염두에 두고 별도로 마련한 게 아니라, 명 황제가 영내 王公大臣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의 의주를 抄錄해서 보내준 것이었다.¹⁵⁰⁾ 이러한 배경과 경위에서 조선에서는 명 황제가 영내 王公大臣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의 의주를 준용하여 국왕 국상 시 弔問(외교)의례를 거행하였다. 그러한 의례는, 상하 차등적 관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망한 외국 군주를 조문하는 성격의 고려전기 弔問(외교)의례와는¹⁵¹⁾ 달리, 기본적으로 고인이 된 자신의 신하에게 행한 황제의 은전이였다.

4. 여언

원 복속기 이전에는 前王이 사망하면 그 후 수일 내에 즉위(사위) 의례가 거행되고, 이후 새로 즉위한 국왕이 告哀表와 稱嗣表를 (책봉국)황제에게 올려 각각 前王의 사망과 자신의 嗣位(즉위) 사실을 알렸다. 그러다 원 복속기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서 고려 자체의 질서에 의해 행해진 즉위는 원과의 관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일로 간주되었고, 일반적으로는 원 측이 왕위를 승습하도록 한 명령이 있고 나서 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와 맞물려 고려 측은 왕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왕의 상을 원 측에 알릴 시에 遺表(奏)

150) 영락제가 영내 王公大臣의 상에 조문하는 의례의 의주를 조선에 한정해서 보내주고, 조선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賜祭 의례, 賜賻 의례, 賜諡 의례를 거행하였으며, 이 이후로도 명이 보내준 의주를 토대로 관련 의주를 정비해 나간 구체적 양상 및 그 현상의 시대성과 역사적 의미에 관해서는 최종석, 앞의 논문, 2023을 참고하기 바란다.

151) 고려전기 弔問(외교)의례에 관해서는 최종석, 위의 논문, 2023 참조.

등을 통해 후계자의 承襲을 요청하였고, 이와 맞물려 원 측에 즉위 사실을 알리는 告嗣位 의례는 존재 기반이 사라졌다. 아울러 원 복속기에는 전에 없던 請諡가 이루어졌다. 이후 공민왕 사후에는 고려전기처럼 전왕 사망 후 며칠 만에 고려 내의 자체 질서를 통해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였으면서도, 명 측에 국왕의 상을 알릴 시에는 원 복속기처럼 국왕위의 공백을 가정한 채 - 국왕에 즉위한 인물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공백이 없었음에도 - 후계자의 承襲을 요청하는 의례가 시행되었고 이로 인해 告嗣位 의례는 여전히 실행될 수 없었다. 그리고 전과 마찬가지로 청시가 행해지면서도 원 복속기와는 달리 국왕의 상을 알릴 시에 함께 이루어졌다. 이처럼 고려 말기의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는 告訃·請諡·請承襲으로 원 복속기를 사실상 고스란히 계승하여 성립되었는데, 조선 시대에 들어서도 그대로 지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우에서 첨언하자면, 고려 말기 이후로는 원 복속기와 달리 전왕이 사망하고서 며칠 내에 자체의 질서에 의해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였으면서도, 원 복속기와 마찬가지로 명 측에 국왕의 상을 알릴 시에 국왕위의 공백을 가정한 채 후계자의 承襲을 요청한 현상은, 근대의 감각에서 보면 독자성을 스스로 제약하거나 포기하는 사대주의적 면모로 읽힐 수 있다. 고려 말기 이후로는 원 복속기와는 분명히 다른 국제적 여건이 조성되었고, 명조가 고려·조선에 상대로 그러한 방식을 강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게 읽힐 수 있다. 그런데 근대의 감각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그 당시의 감각에서 보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에서 즉위가 이루어졌는데도 명을 상대로 해서는 국왕위의 공백을 가정한 채 승습을 요청하는 것은 독자성을 스스로 제약하고자 한 데서가 아니라 고려전기와 다름없이 독자성을 향유하면서도 독자성을 구현하는 방식-독자성의 실현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환경 - 이 다른 데서 비롯된 일이었을 것이다.

고려 말기 이후 국왕 국상 시 외교의례 방면에서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의식세계의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원 복속 하에서 고려의 유자 관료들은 화이 의식을 원안대로 수용하여-

지역과 종족 면에서 변방성(marginality)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초월하여 보편 문화(문명)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 당시의 현실을 전유하고 정당화했다. 곧 원 복속기에 자신을 종족과 공간의 측면에서 이적으로 간주하면서도 여타 이적들과 달리 보편적 성격의 중화 문명(문화)을 추구·향유한다고 하는 의식(“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이 대두하여 통용되었고, 그러한 의식 속에서 당시 유자 관료들은 고려가 ‘보통의 오랑캐(常夷)’와 달리 중화 문명(문화)을 추구·구현한 까닭에 원의 천자를 정점으로 한 천하질서를 수용·긍정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상인 이적 세계(중국 밖 외국)의 제후(국)를 망각하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한다는 식으로 당시의 현실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은 고려 말기 이후로도 지속했기는 하나, 원 복속 하의 당면 현실을 추수하거나 수습하는 데서 탈피하여, 자기 신념적, 내향적 성격의 것으로 변모하고 진화해 갔다. 특히 조선 시대 들어서는 고려 말기와 달리 자기 신념화된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 의식’이 유자 관료들 전반에 자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유교 가치의 내면화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의식 속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천하 속에 東國(東夷 세계)과 東人(東夷 사람)을 자리매김하기에, 명의 천자를 정점으로 한 천하질서를 수용·긍정하면서 동시에 그 내에서 자신의 위상인 이적 세계(중국 밖 외국)에 자리한 제후(국)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도덕과 예를 핵심 가치로 하는 문명 중화를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자기 신념적으로 이를 추구했기에 제후 위상을 피동적이고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천하질서 내에서 자신의 ‘分’- 제후의 분 - 을 자기 신념적으로 견지해야만 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독자성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차원을 달리한 채 자기 신념적으로 제후의 위상을 견지하고 그에 걸맞은 예를 실천해야 했을 것이다.¹⁵²⁾

고려 말기 이후로는 독자성을 향유하여 자체의 질서에 의해 새로운 국왕

152) 최종석, 「고려후기 ‘자신을 夷로 간주하는 화이의식’의 탄생과 내향화 -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최종석,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참조.

을 세우면서도 명을 상대로 해서는 국왕위의 공백을 가정한 채 국내에서는 이미 즉위한 인물을 후계자라 칭하면서 承襲을 요청한 행위는, 현재의 감각에서는 자주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지겠지만 당시의 맥락 속에서는 가치와 지향에 부합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병익, 「高麗忠宣王의 元武宗擁立」, 『역사학보』 17·18, 역사학회, 1962.
- 권용철, 「大元帝國 末期 政局과 고려 충혜왕의 즉위, 복위, 폐위」, 『한국사학보』 56, 고려사학회, 2014.
- 김광철, 「고려 충혜왕대 측근정치의 운영과 그 성격」, 『國史館論叢』 71, 국사편찬위원회, 1996.
- _____, 『원간섭기 고려의 측근정치와 개혁정치』, 경인문화사, 2018.
- 김당택, 「고려 忠肅王代의 瀋王 翁嵬 운동」, 『歷史學研究』 12, 호남사학회, 1993.
- 김순자,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혜안, 2007.
- 김지영, 「조선시대 사위의례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1, 조선시대사학회, 2012.
- 김철웅, 「고려시대 국왕의 즉위의례」, 『정신문화연구』 38(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김형수, 「충혜왕의 폐위와 고려 유자儒者들의 공민왕 지원 배경」, 『국학연구』 19, 한국국학진흥원, 2011.
- 김혜원, 「고려후기 瀋王 연구」, 이화여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 심재석,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2002.
- 안기혁, 「어말선초 대중국관계와 국왕시호(國王諡號)」, 『역사와 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2017.
- 윤승희, 「조선 초기 賜賚·賜諡·賜祭儀禮와 明禮의 영향」, 『한국학논총』 57,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22.
- 이명미, 「忠肅王代 國王位 관련 논의와 국왕 위상」, 『한국중세사연구』 36, 한국중세사학회, 2013.
- _____,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혜안, 2016.
- 이승민, 「고려시대 국상 의례와 조문 시행 연구」,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_____, 「고려 국왕 즉위에 관한 외교 형식의 변화와 의미」, 『역사문화연구』 86,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2023.
- 이익주, 「고려·원 관계의 구조와 고려후기 정치체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6.
- _____, 「14세기 전반 高麗·元關係와 政治勢力 동향 - 忠肅王代의 瀋王擁立運動을 중심으로 -」, 『한국중세사연구』 9, 한국중세사학회, 2000.
- _____,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 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 이현진, 「명·청의 賜祭·賜諡에 대한 조선의 대응」, 『조선시대사학보』 63, 조선시대사학회, 2012.
- _____, 「조선전기 국왕 국장(國葬)에서 명(明) 사신의 의례설행과 그 공간」, 『조선시대사학보』 85, 조선시대사학회, 2018.
- 장지연, 「고려 초 卽位儀禮와 喪禮를 통해 본 권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47, 한국중세사학회, 2016.
- 정동훈, 「몽골제국의 붕괴와 고려-명의 유산 상속 분쟁」,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 최윤정, 「14세기 초(1307~1323) 元 政局과 고려 - 1320년 충선왕 토번유배 원인 재론」, 『역사학보』 226, 역사학회, 2015.
- 최중석, 「고려시대 朝賀儀 의례 구조의 변동과 국가 위상」, 『한국문화』 5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
- _____, 「고려후기 '자신을 喪로 간주하는 화의의식'의 탄생과 내항화 - 조선적 자기 정체성의 모태를 찾아서 -」, 『민족문화연구』 7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7.
- _____, 「13-15세기 천하질서하에서 고려와 조선의 국가 정체성」, 『역사비평』 121, 역사비평사, 2017.
- _____, 「고려후기 '전형적' 제후국 외교의례의 창출과 몽골 임팩트: '전형적인' 조공 책봉 관계의 이해 심화를 겸하여」, 김형찬 외, 『한국 문화의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 _____, 「조선 건국의 대외적 정당화 작업과 중화 보편의 추구」, 『한국사연구』 180, 한국사연구회, 2018.
- _____, 「告哀·稱嗣에서 告訃·講諭·講承襲으로 -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국상 시 책봉국에 행한 외교의례를 비교하며 -」, 『한국문화』 9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 _____, 「고려전기와 조선초기 국상 시 황제국 측의 조문 외교 의례의 비교 탐색」, 『민족문화연구』 9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3.

The Transformation of Diplomatic Rituals for the Mourning a King during Yuan Subjugation and their Continuation through Appropriation.

Ch'oe Chongsök*

In previous scholarly inquiries, I have undertaken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temporal discontinuities between the early Koryō and Chosōn eras, particularly in terms of diplomatic rituals executed towards the Chinese emperor following a monarch's demise, the Chinese imperial state's condolence rites in such circumstances. This was to prove the following facts. In terms of diplomatic rites for the mourning of a king, there was a profound and holistic metamorphosis in the diplomatic protocols observed during the Yuan subjugation. This evolved framework of diplomatic rites persisted, devoid of any significant qualitative alterations, well beyond the termination of the Koryō Dynasty, through processes of appropriation and succession.

However, the previous research has not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diplomatic rituals for the mourning a king during the Yuan subjugation period. The present study rigorously delineates that such a transformation did indeed occur within the sphere of these diplomatic rituals, identifying the Yuan subjugation epoch as a pivotal juncture. The study further elucidates that this transformative paradigm maintained its qualitative essence unaltered in subsequent periods, sustained through mechanisms of appropriation and succession. Additionally, this paper delves into the historical implications and contextual underpinnings of these significant shifts in diplomatic practices.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Korean History, Dongduk Women's Univ.

Key words: Diplomatic ritual, Koryŏ(高麗), Chosŏn(朝鮮), Yuan(元), Ming(明)